

碩士學位論文

濟州地域 漁村契 活性化 政策에 關한 研究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 專攻

朴 太 熙

2009年 2月

濟州地域 漁村契 活性化 政策에 關한 研究

指導教授 金 性 俊

朴 太 熙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9년 2월

朴太熙의 行政學科 一般行政 專攻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2009年 2月

A Study on Fishing Fraternity Revitalization on Jeju Island

Tae-Hee Park

(Supervised by professor Sung-Ju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2009.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이론적 배경	4
제1절 지역개발	4
제2절 어촌지역개발 정책	9
제3절 선행연구 검토	23
제4절 연구분석의 틀	28
제3장 제주지역 어촌의 현황 및 실태분석	29
제1절 어촌계 현황	29
제2절 조사의 설계 및 분석	30
제3절 문제점 및 시사점	35
제4장 국내·외 어촌사업 및 어촌개발정책 사례분석	37
제1절 국내사례	37
제2절 국외사례	65
제3절 사례의 시사점	73
제5장 제주지역 어촌계 활성화 정책의 발전방안	75
1. 어촌주민의 역량강화	75
2. 어촌 물적 기반의 확충	77
3. 어촌계 관리운영의 강화	79
4. 신 관광자원의 융합 및 개발 필요성	82
5. 지원 및 협조체제의 강화	84

제6장 결 론	86
참고문헌	89
ABSTRACT	93
부 록 1. 설문지	95
2. 어촌계 정관(예)	100
3. 어촌계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116



표 목 차

<표 2-1> 어촌종합개발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19
<표 2-2> 1단계 시·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19
<표 2-3> 제주지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20
<표 2-4>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조성계획	21
<표 2-5> 제주지역 어촌체험마을조성 실적	22
<표 2-6> 연도별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계획	22
<표 2-7> 선행연구 요약	26
<표 2-8> 분석의 틀 구성요인	28
<표 3-1> 전국 어촌계 현황	29
<표 3-2> 설문조사표 회수내역	30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우리의 어촌은 소득과 생활환경, 복지여건 등 모든 면에서 도시에 비해서 열악하며 날이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 도시와 어촌 간 격차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1차 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취업기회의 부족, 소득기반시설의 미흡 등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어촌은 고기를 잡거나 해조류를 채취하는 장소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촌에 대한 지원정책은 수산물생산 위주의 정책에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민들도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환경과 어촌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고유한 생활방식이나 어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촌은 바다자원의 이용은 물론 관련 자원의 이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소득의 크기가 결정되므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해야 하는지가 큰 관심거리이다. 어촌계는 이러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할 때 지역어업인들의 소득은 증가할 것이다. 어촌의 유·무형의 자원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촌의 가치는 떨어지므로 어촌계원은 물론 마을주민들은 이를 감안하여 자원을 이용하고 보전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어촌은 어업자원감소와 수산물 수입의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69.5% 수준에 불과하여 이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소득사업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어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촌관광¹⁾ 등 소득사업 개발이지만 체계적인 발전모델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지역 어촌계 활성화의 한 수단으로서 어촌지역의 발전 가능성과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개발, 어촌개발사업 및 국내·외 어촌관광사례를 선행 연구하고, 어촌계의 개발여건과 소득

1) 어촌관광은 연안과 도서, 어촌, 해변 등을 포함하는 공간에 부존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사회의 경제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친환경적으로 일어나는 관광목적의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박광범, 2005.6. “어촌관광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정책연구원, p. 7.

사업의 운영실태 등의 유형을 설문조사하여 발전가능성 등을 검토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어촌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국내·외의 지역개발 및 농어촌개발에 관한 문헌적 연구와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이론적 근거로 삼았다. 공간적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내 어촌계를 연구지역으로 삼았다. 그리고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어촌개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총 6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제시하였고,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지역개발 및 어촌지역개발 정책, 선행연구 검토, 연구분석의 틀로 체계화했다.

제3장은 제주지역 어촌의 현황 및 실태분석으로 어촌계 현황, 조사의 설계 및 분석, 문제점 및 시사점으로 구성하였다.

제4장은 국내·외 어촌사업 및 어촌개발정책의 사례분석을 다루었다.

제5장은 제주지역 어촌계 활성화 정책의 발전방안을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 제6장은 결론으로 연구의 요약에 대해 기술하였다.

2. 연구의 방법

우리나라의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어촌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계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소속 지구별 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의 행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어촌계 제도 하에서 어촌계의 기능, 어촌계와 수협과의 관계, 어촌계와 행정과의 관계 등 조직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어촌개발 정책의 변천과정과 어촌개발 사례 등을 살펴보고 어촌계의 개발여건 등을 조사하여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수산업

협동조합 관련 법령에서부터 어촌계 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의 문헌조사를 통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얻어진 각종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접근방법과 일선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자료를 참고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지역개발

1. 지역개발이론의 개관²⁾

지역개발의 전통적 사고는 물리적 환경정비와 지역복지의 개념이다. 그 지향하는 바는 균형개발과 총체적 지역발전이다. 즉, 지역개발이란 일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생산기반과 생활기반을 정비한다는 물적계획(physical planning)에 근거하며, 나아가서 지역의 경제적 소득증대와 주민의 복지향상을 겨냥하는 경제·사회적 발전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의 경제개발, 사회개발, 물적개발 및 균형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른바 지역발전의 양과 질, 유형적 발전과 무형적 발전의 동시추구라는 통념적인 지역개발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지역개발이론의 변천을 연대기적 설명적 기술을 통하여 개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50~1960년대에 있어서 지역개발의 사회적 관심은 저개발이었다. 저개발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함이 개발의 최우선적 과제였다. 그 당시로서는 경제성장모형이 가장 바람직한 패러다임이었으며 슈페터(Joseph A. Schumpeter, 1934)의 자본주의적 경제성장이론에 기초한 모델이다. 이 모델은 전통적인 지역개발 개념의 한 부분인 양적성장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둘째, 1970년대의 개발접근방법은 경제성장 보다는 사회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재분배모델, 기초수요접근방법, 상향식개발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특히 1973년의 자원위기는 전통적인 패러다임에 동요를 일으켰으며 성장보다는 최소한의 생활보장과 사회적 혜택의 증대가 개발정책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IBRD(국제부흥개발은행)의 연구테마인 「성장을 통한 재분배」가 당시의 개발정책을 상징한다. 즉, 1970년대를 통하여 제기되었던 일련의 지역개발이론과 접근방법을 재분배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셋째, 1980년대에 와서는 지방화시대의 전개와 함께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

2) 고병호. 1995. “지역개발이론의 체계적 접근과 발전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보 제8집. pp. 81~84.

략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기했다. 지역 중심의 정책이 활발히 펼쳐지면서 지방 경영이 중요시 되었다. 상향식 개발이론은 1980년대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발전략으로 추진되었으며, 지역 스스로의 자원가동과 자립노력에 의한 내생적(內生的) 개발, 외부적 자극보다는 외부지향적인 내발적(內發的) 개발이 등장했다. 지방의 기술과 변화, 지방 고유의 자원과 잠재력, 쇠퇴적 능력과 기업가 정신을 동원하는 지방 고유개발도 같은 맥락에서의 상향식개발의 유형이다.

넷째,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오랜 동안 관심사였으면서도 방치되었던 환경문제가 그 심각성과 함께 지역개발의 가장 중요한 논점사항이 되었다. 과거 성장과 재분배의 논리, 효율성과 형평성의 갈등, 그리고 상향식개발이나 하향식개발은 건강하고 환경우호적인 삶의 공간 확보 없이는 무의미한 것이다. 여기서 이른바 환경친화적 개발, 인간성장의 개발이 등장한다. 지역개발이 환경친화적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환경생태계에 대한 수용능력을 밝히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기 위한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환경모델의 등장도 지역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다.

2. 농어촌개발의 개념 및 주요이론³⁾

1) 농어촌개발의 개념

(1) 농어촌

일반적으로 농어촌이란 도시지역에 대조되는 말로서 주로 농어업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지역단위를 이루고 있는 유기체적 공간이다. 농어업을 생업으로 하여 살아간다는 개념 속에서 농어업을 주로 하는 것과 농어업 외에 다른 산업도 포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 농어촌에는 농림수산업 외에도 광업, 제조업을 비롯하여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도 있고 행정기관, 학교, 사원, 관광명소도 있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농어촌은 생산의 장과 생활의 장이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곳이다. 농어촌지역을 규정할 때, 도시지역과의 관계나 구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세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첫째, 농어촌과 도시를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보는 견해이다. 이것은 농어촌의 개념과 사회구조를 파악하고자 할 때 도시와의 관련성이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3) 이규복. 1990. “한국 농어촌개발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15.

보다는 도시와의 차이나 대조만을 독립하여 폐쇄적으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 농어촌과 도시를 개발수준선상의 연속적 관계로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상호관련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소도읍, 농어촌 등과 같이 도시화 또는 발전수준에 따라 등급을 둔 연속적 관계로 보는 입장이다.

셋째, 농어촌과 도시를 공생적 관계로 파악하려는 견해이다. 연속적 접근에서는 농어촌과 도시간의 상대적 차이는 크게 인정하고 있지만, 농어촌과 도시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중시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공생적 관계를 강조하는 이 견해에 따르면 커다란 전체 사회구조 속에서 농어촌과 도시가 생태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농어촌사회만을 따로 분리시켜 보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세 가지 견해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로 첫 번째 견해의 이분법적 논리로 농어촌지역을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사회에 있어서 농어촌은 도시에 대한 식량생산의 기능과 역할에서 어쩔 수 없이 수동적인 것이 된다. 즉, 농어촌은 도시에 식량과 원료를 공급하고 대신 공산품과 서비스를 얻게 된다.

(2) 농어촌개발

농어촌개발은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농어업개발 보다도 폭넓은 개념이다. 하리스(John Harriss)는 세계은행의 정의에 따라 “농촌개발이란 농촌빈곤층의 경제, 사회적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개념 짓고 있으며 농업생산의 발전 그 이상을 농어촌개발로 보고 있다.

농어촌개발은 농어업과 농어촌경제의 여러 측면에 관계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의 배분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다. 농어촌개발은 농어업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경제, 농어촌지역사회, 농어촌 생활환경의 개선 등 농어촌개발의 여러 측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농어촌개발은 곧 농어촌 종합개발을 말하며 종합이란 말은 농어촌계획의 다목적성을 뜻한다. 즉, 농어촌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개선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서 농어촌의 생활환경과 생산 환경의 기반을 정비·확충하고, 나아가서 도시지역으로 치우친 사회, 경제적 기회, 투자 및 개발의 힘을 농어촌지역으로도 배분하게 함으로서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데에 농어촌개발의 의의가 있다.

2) 농어촌개발의 주요이론

농어촌개발이론으로서는 농촌중심권개발이론, 농(農)·도(都)지구이론, 중심취락정책(中心聚落政策), 소도시권개발 그리고 지역생활권개발전략 등을 들 수 있다.

(1) 농촌중심권개발이론

농촌중심권개발이론은 새로운 이론이 아니라 지금까지 알려진 농어촌개발에 관한 이론, 농어촌의 소도읍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론으로 농어촌의 중심도시를 활성화하고 주변 농어촌지역과 종합개발을 시도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서 나온 이론이다.

UN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1976년에 열린 제32차 회의에서 농촌중심권의 설정을 포함한 농어촌정주계획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문가그룹 회의를 조직했다. 그 결과 1978년 방콕회의에서 농어촌중심권 계획지침이 마련된 바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개발모델은 대체로 ① 최대한의 경제성장 ② 부의 공평한 배분 ③ 자연에 대한 파괴적인 효과의 극소화 즉 생태학적 모델 등의 세 가지 방향으로 요약된다고 하면서 농어촌중심권개발은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을 결합시키는 접근방법이며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다.

(2) 농·도지구이론

농어촌지구 전략은 프리드만(John Friedmann)에 의하여 특히 아시아지역의 농어촌개발을 위한 공간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농·도지구 접근방법은 자발적 개발과 기본수요 개념을 통합한 것으로 인구 약 5만 명 정도의 규모로서 20~30개의 마을을 포함하는 지역이다.

이 이론은 농어촌개발의 공간단위로서 마을 및 취락단위는 너무 작고, 하부구조 및 사회간접자본의 투자, 농외소득, 고용기회의 창출, 서비스 제공 등의 기회를 배제하며 농업생산 및 폐쇄적 전통사회에 안주하는 결함이 있다고 한다. 또한 성장거점은 도시 편중적이고 예상대로 개발확산 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새로운 농어촌개발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대안으로서 농·도지구의 형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중심취락정책

영국의 농촌지역을 계획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기여를 한 중심취락 정책은 농촌공간개발을 위한 촌락중심지의 개발에 목적을 둔 것이지만 도시·농촌의 연계개발을 구상하는데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큰 접근방법이다.

중심취락개념은 농어촌 거주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와 시설을 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제공하기 위하여 구상된 것이다. 피크(Harold Peake)는 1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농촌취락의 미래를 위한 계획에 관심을 가지고 이론적인 촌락형태를 생각했다. 그의 이상적인 촌락형태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서비스 최소 요구치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촌락을 말한다.

중심취락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어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없지만 농어촌 중심도시 이하의 규모로 보는 것이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농어촌 중심도시가 고차의 중심지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권이라면 중심취락은 하위의 농어촌 촌락 중심지에 해당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실정에 있어서 면소재지이거나 인구 2,000~3,000명 정도의 취락을 중심취락으로 볼 수 있겠다.

(4) 소단위농촌도시권이론

소단위농촌도시권은 미국에서 대도시권 이외의 지역을 지칭한다. 즉, 인구 5만 명 이상의 중심시(中心市)가 없는 군(郡, counties)을 말한다. 군의 행정구역은 소도시(small cities), 읍(towns) 및 농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단위농촌중심권은 소도읍과 그 주변지역의 농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겠다.

1970년 미국의 농촌개발대통령특별위원회는 마이크로폴리탄의 개발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마이크로폴리탄 지역 내에 있는 소도시, 읍 및 농촌지역 사회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정비·개선하고, 고용기회, 지역사회서비스 및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목적은 농촌지역의 개발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형평성을 띤 사회경제체제를 육성해 나가자는 데 뜻이 있다.

(5) 지역생활권개발전략

지역생활권개발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된 개발전략의 하나로서 과

거의 하향식개발 및 거점개발방식이 초래한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각 지역 단위별로 생산 공간과 생활공간이 융합된 생활권을 형성해 보고자 하는 구상에 서 나온 것이다.

지역생활권 개발이 목표하는 것은 대도시의 과밀(過密)과 농어촌지역의 과소문 제(過疎問題)를 해결 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전국을 중심도시와 융합 농어촌지역을 결합시킨 일정범위의 공간단위로 구획하여 권역적 도시와 농어촌 의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제반 생활편익 시설을 갖추어 권역 내에서 어느 정도의 자족적(自足的)인 생활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전국을 균 형 있게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제2절 어촌지역개발 정책

1. 어촌계의 의의 및 조직

1) 어촌계의 성격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어촌 계의 기본은 어업공동체에 두고 있다. 1962년 수산업협동조합법이 발효할 때까지 우리나라 연안어촌에는 많은 어업공동체가 존재하였고, 그러한 어업공동체는 부 분적으로 변질, 해체과정을 갖는 것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본질적 속성을 유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제도적인 조직으로서 쉽게 틀을 잡아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관점에서 조직되고 설립된 어촌계 성격은 연안어장에 대한 합 리적 관리주체로서 이해될 수 있다. 즉 1962년 수협 설립 이전의 연안어장은 자 생적인 어업공동체에 의해 유지 관리가 되고 무규제, 무관리의 방임적 상태에 있 었다고 볼 수 있다. 수협과 어촌계가 제도적으로 조직됨으로서 방임적 상태의 연 안어장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공동어업권을 신설하여 어촌계에 면허를 하도 록 한 것은 이러한 관점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4)

4) 옥영수. 2004. “어촌의 구조변화와 향후 어업 및 어촌정책 방향”, 월간 해양수산 8월호. 한국해양수 산개발원. pp. 47~48.

수협과 어촌계에 의한 어장관리기능이 보다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새마을운동의 확산에 따라 연안어촌에서의 소득증대사업 등에 대한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연안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비법인어촌계에 대해서도 총유(總有)⁵⁾형태의 면허가 가능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어촌계에 총유형태의 면허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법적 관점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단독으로 면허를 부여하기가 힘들더라도 구성원 전체의 공동이용, 공동관리 형태일 경우는 면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연안어장의 이용을 둘러싼 연안어업인의 전체에 대한 사회보장적 기능과 제도적으로 형성된 어촌계에 대한 경제적인 여건조성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촌계는 연안어장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주체적 활동을 보장받았다고 할 수 있고 면허어장에 대해서는 총유형태로 면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마을어업은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定着性)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으로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만 면허하고 있다.

2) 어촌계의 기능

어촌계는 어장이용의 주체가 된다. 우리나라 연안어촌의 어업구조는 어선어업,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등으로 대별되고 있다. 자본 규모가 큰 양식어업이나 중·소규모 어선어업이 존재하는가 하면 연안, 도서지역에는 농지는 물론 어업기반이 거의 없는 영세 어업인 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영세 어업인 들은 계절에 따른 소규모어업에 종사하거나 맨손, 나잠어업 등으로 겨우 생활해 나가는 정도다. 따라서 이러한 영세 어가들에게 물적 생활터전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생활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도록 하자는 입법정책의 표현이 바로 어촌계에 대한 어업권 취득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여러 가지 계(契)가 존재하였으며 특히 연안어촌에 있어서

5) 총유란 어느 집단이 소유대상을 집단으로 점취·관리하여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균등하게 이용케 하되, 개개 구성원의 지분권(持分權)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은 그 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성원이 자격이 상실되면 자동적으로 집단으로 귀속되는 소유형태를 일컫는다. 따라서 합유(合有)나 공유(公有)에 비하여 매우 강하다. 박광순. 1998. 전남대학교 출판부. p. 93. 참조

는 어업공동체가 존재하여 왔다. 이러한 자생적인 어업공동체를 제도적 틀로서 실체화시킨 것이 바로 오늘날의 어촌계라 할 수 있다. 즉 1962년 수협이 발족되면서 전래의 자생적인 어업공동체를 어촌계라는 조직체로서 법제화시켰는데 이들 어촌계는 때에 따라서는 수협의 하부조직, 혹은 기반조직으로서 수협운동의 최일선 조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수협운동에 있어서 이러한 조직을 두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수산업의 자본주의적 발달과정에 있어서 영세 소규모 어업의 발달과 어촌의 번영을 전통적인 어업인의 협동정신, 즉 계(契)의 본질적 기능과 자활적 기능에서 구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다. 어촌계에 대한 어업면허는 이와 같이 조직으로서의 어촌계가 경제적으로 존립 가능하기 위한 기초적 조건으로서 부여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3) 어촌계의 설립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어촌계는 구역 안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설립준비위원회의 의사는 재적 발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창립총회의 의사는 어촌계원의 자격이 있는 자 중 개의 전까지 설립준비위원회에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어촌계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어촌계에 가입할 수 있으며, 어촌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 중 어촌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 또는 어촌계의 구역 안에 있는 지구별 수협이 소유한 마을어업권의 어장에 입어를 하는 자와 어촌계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어촌계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준 어촌계원이 될 수 있다.

4) 어촌계의 사업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어촌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촌계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사업,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소속 지구별 수협이 소유하는 어업권의 행사,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수산물의 간이공동제조 및 가공,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다른 법령이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기타 어촌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어촌계는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운용하거나 수협중앙회 또는 지구별 수협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5) 어촌계와 수협과의 관계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지구명을,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그 업종명 또는 품종명을,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각각 사용하여야 하고, 중앙회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수협은행이라는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당해 구역안의 20인 이상의 조합원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얻은 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은 어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자재·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그 구역 안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어업을 경영하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조합원의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가공품의 판로확대 및 유통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향상을 증대함을 목적으로 그 구역 안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자로서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며 회원은 조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촌계의 사업 중 신용사업을 제외하고는 지구별 또는 업종별 수협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이 되고 있으나 어촌계가 영위하는 사업은 소규모로서 수협과 큰 충돌은 없다고 할 수 있다.

2007년도 말 현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조합으로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72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20개,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2개 등 총 94개가 있다.

6) 어촌계와 행정과의 관계

어촌계는 수협의 하부 조직이면서 행정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수협법상 비법인 어촌계의 설립인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고 있으나, 지도감독 권한은 지구별 수협과 이원화 돼있다.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은 조합구역안의 어촌계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 및 그 관련 업무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구별수협의 조합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도·감독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 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촌계를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비법인어촌계 설립 인가권은 기초자치단체장이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인 어촌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은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한 사업이나 관련 업무에 대해서만 지도·감독할 수 있어 제도상으로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어촌계와 일선 행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어촌계는 지구별수협의 하부조직이라는 개념보다는 일선 시·군·구 또는 읍·면의 최 일선 수산행정 조직의 성격이 강한 어촌사회 집단이라 표현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2. 어촌개발정책의 변천과정⁶⁾

1) 일제시대

우리나라의 어촌개발계획은 시대 상황에 따라 그 방식의 변천되어 왔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해조류·패류의 채취, 소규모 정치망 형태의 어업이 영위되고 있었음이 각종 문헌을 통해 밝혀지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었지 산업개발이나 사회개발차원은 아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대적 의미의 개발계획은 1920년대 초의 미곡증산운동과 1930년대의 빈민구제정책 및 1931~1940년까지의 자력갱신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시각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개발정책은 1929년 세계경제 대공황, 일본의 쌀 대풍작, 내선일체(內鮮一體) 조작 등 자국의 침략전 호도를 위한 정치·경제적 목적이었지 우리나라의 산업개발이나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에 형식적인 개발계획에 불과하고 진정한 의미의 개발계획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해방이후~1960년

해방 후부터 1960년에 이르기까지 한국사회는 「해방 직후의 혼란기→6.25전란기→전후 부흥 및 안정·회복기」라는 매우 급격한 국면 변화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각각의 국면은 그때그때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목표 하에 일관된 정책을 운영할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촌지역 개발사업 또는 정책은 농어촌·농림수산업부문 개발을 위한 제도적 틀을 형성하던 1957~58년이 이르러 비로소 도입되게 되었으며, 그 주된 내용으로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농촌지도사업, 협동조합운동, 4-H클럽운동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수산업·어촌의 경우 농업·농촌의 일부로서 존재하였으며 6.25의 피해를 복구하는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고 그나마도 증산과 생산기반시설에 전액이 투자되고 있었을 뿐 경제사회개발이라는 차원에서 진정한 어촌개발에는 손 쓸 겨를이 없었다.

6) 수산청. 1996. “수산청 30년사”, pp. 617~621.

3) 1960년대~1970년대

1960년대에 들어와 5.16 군사정부는 “모든 사회·경제적인 악순환을 시정하는 자립 경제기반구축”을 목표로 하여 5개년 단위의 경제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였다.

1~4차 경제개발계획(1962~1981)은 경제성장의 극대화가 지상의 국가목표로 자리 잡았으며 경제성장만 이룩되면 경제문제는 물론 정치, 행정,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경제제일주의 개발철학에 의해 뒷받침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 불균형성장, 대외 지향적 성장, 선 성장 후 배분론의 4가지 발전전략이 수출주도형 개발전략으로 체계화되었다.

1~2차 경제개발계획이 노동집약적 공업화정책이었다면 3~4차 계획은 기술집약적 중화학공업정책이라 할 수 있으며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이라는 공간계획과 연결되고 새마을운동이라는 도·농 통합론적 개발운동과 연계되었다는 점이 특색이었다.

이 시기 중 수산업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하였다. 1966년 2월 28일 농림부의 1개국(수산물)에 불과했던 수산업무 담당부서가 1실 3국의 수산청으로 발족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현대적인 어촌개발에 관한 개념은 없었다.

당시 직제를 보더라도 기획관리실, 어정국, 생산국, 시설국으로 되어 있고 어정국은 어정과, 협동조합과, 자료조사과를 두고 협동조합과의 사무분장에서 어촌개발과 유사한 “어가의 경영지도와 생활개선 및 부업장려” 정도의 사무분장 내용을 두었으나 그 예산 또한 책정되지 아니하였고 생활개선 및 부업장려 사업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4) 1980년대~현재

(1) 사회경제적 여건과 국가정책 기초

그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도시집중, 지역간 및 도시·농촌간 불균형, 환경오염과 자연훼손 등의 문제가 1970년대 후반부터 심각하게 노정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학계와 관련 중앙부처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국토개발전략의 전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내적인 지역 정책여건의 변화와 더불어 1970년대 이후 세계의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고 있던 상향적 개발을 패러다임으로 하는 지역 개발론과 주요 국가의 지역정책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국토개발 기조의 변화 또는 개발전략의 전환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매우 영향력 있는 준거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는 첫째, 인간이 개발의 목적이 되는 인간중심의 개발이념과 둘째, 지역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지역 주의적(regionalism) 개발전략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념과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중심지이론(central place theory)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적용을 통한 생활권 개발 개념을 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념과 전략 아래서 건설부가 수립한 「제2차 국토계획 수정계획(1987~1991)」에서는 농어촌지역 개발의 경우 군 행정구역 크기의 정주생활권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중심지인 농어촌 지원도시를 “도농통합의 거점”으로 하여 배후 농어촌과 연계하여 종합개발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서 농어촌지역 종합개발방식을 수용하고 있다.

(2) 어촌개발정책의 본격적 추진

위와 같은 연대적 배경 하에 어촌에 있어서도 현대적 의미의 어촌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당시까지의 수산정책이 증산위주의 산업정책이었던 관계로 어촌에 지원되는 사업은 영어자금 등 어업경영비와 어항시설, 어선 건조, 증양식 시설 및 인공어초시설 등에 국한되어 생활이나 복지와는 거리가 멀었으며 그 세부사업 내용도 정부가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품목이나 시설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기술수준이 낮거나 소규모인 연안어업인 및 어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개발여건이 구비되고 잠재력이 있으면서도 종합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일부 품목에 국한된 소량의 사업만을 수행할 수 있어 그 투자효과가 지속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와 연결되지 못하고 단기간에 끝나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88년부터 어패류양식 등 소득증대사업과 도로 등 생산기반시설 및 상하수도, 어민회관 등 어업인 복지시설 중 어촌계 스스로 선택하여 시설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전환하였다.

사업내용도 시행초기인 1988년도에는 어업인들과 집행기관의 인식부족으로 방

과제, 물양장, 패류양식 등 5개 사업에 국한하였으나 점차 사업내용이 다양화 되어 1995년도에는 방과제, 물양장, 양식사업 외에도 관광어장, 유어선, 식사·숙박 시설, 냉동·냉장시설, 공동작업장, 종묘배양장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시범사업 시행결과 단위마을(어촌계)별 지원으로 인한 각종 기반시설의 분산 투자로 사업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마을간 바람직스럽지 못한 경쟁과 반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 1994년부터는 권역별 종합개발방식으로 전환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최근의 어촌개발은 소득증대와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어촌종합개발사업, 어촌 체험마을 조성, 어촌관광개발 사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3. 어촌개발과 어촌계의 역할

어촌계에 지원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이나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등의 어촌공동 시설물은 어촌의 소득증대와 직결된다. 여기서 한 가지 추가한다면 어촌소득증대 방안으로 어업의 소득의 증대를 들 수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업의 소득은 이자수입, 농업과 겸업 소득, 이전소득⁷⁾ 등이 있다.

이외에 수산물 가공공장이나 육상양식장 등은 어촌계의 자본부족과 조직의 한계성으로 인해 실현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어업의 소득증대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어촌관광 등을 통한 어촌활성화를 들 수 있다. 어업체험, 낚시어선, 향토음식점, 유어장, 천연자연환경 등을 이용한 어촌관광 사업은 어촌계가 추진할 수 있는 어업의 소득원이라 할 수 있다.

어촌은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육지와 다른 생태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시민이 자주 찾는 휴양지로 개발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개발여건이 좋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개발이 유보된 채 그대로 놔두었다. 어촌지역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80년대 후반부터 관광여건이 좋은 지역에 민박시설과 활어횃집을 지원했다. 설문조사에서 보듯이 도내 어촌계에 지원된 소득사업은 민박, 수산물직판장, 활어횃집 순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어촌개발을 위해서는 지역의 수산업과 어촌·어항이 안고 있는 상황인식이 중

7) 이전소득이란 어업관련보조금, 국민연금 등 공적보조금,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등 사적보조금을 말한다.

요하다. 어촌·어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어장환경변화에 의한 주변어장의 자원 감소, 해양성 레크레이션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해역이용의 경합, 수입수산물 증가에 따른 지역수산업의 위축, 어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진전에 따른 어업후계자 부족 등이 있다.

어촌·어항은 어업인이 생업의 장으로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적 가치로서 존속도 필요하므로 어촌·어항이 건전한 지역사회로서 성립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촌계에서 추진하는 어촌개발사업은 사업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으나 간혹 외부 사업자가 어촌관광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어촌계와 사업자간에 새로운 갈등을 야기 시킬 수도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촌계는 지역 어촌의 조직으로서 역할과 지혜로서 사업자를 이해하고 서로 윈윈(Win-Win)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4. 어촌개발정책 사업 사례

1) 어촌종합개발

어촌종합개발사업은 낙후어촌의 정주생활 환경개선과 수산업 생산기반시설 등을 지원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어촌·어항법 제9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 및 농어촌 정비법 제4조(농어촌정비종합계획 등)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94~2013년까지 232개 권역에 총사업비 8,795억원을 투입하여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은 <표 2-1>과 같다. 사업규모는 1단계(1994~2007) 사업은 160개 권역으로 대상으로 권역당 평균 35억원이 투자되고, 2단계(2007~2013) 사업은 72개 권역을 대상으로 대권역은 50억원, 중권역은 40억원, 소권역은 30억원이 투자되고 있다. 사업비 지원조건은 2003년 이전사업은 국고보조 50%, 지방비 45%, 자담 5%이며, 2004년 이후부터는 국고보조 80%, 지방비 15%, 자담 5% 부담으로 지원이 되고 있다. 지원사업은 생산기반시설로서 선착장, 해안도로, 호안시설 등이 있으며, 소득기반 시설사업은 공동작업장, 어업용 창고, 산지가공처리시설, 냉동·냉장시설, 산지간이 위판장, 해안소공원, 낚시터조성, 체험 기반시설 등이 있다.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시설사업으로는 마을진입도로정비, 상하수도 및 급수시설, 공동화장실, 어업인 회관, 경로당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수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소득기반

시설 및 관광기반시설, 타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등은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위배되지 않은 경우 추진할 수 있다.

<표 2-1> 어촌종합개발 연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

구 분	총계획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사업량(권역)	232	152(24)	(20)	56(12)
사업비(억원)	8,795	5,620	388	2,787
- 국 고	5,683	3,143	310	2,230
- 지방비	2,686	2,241	69	376
- 자 담	426	236	9	181

자료 :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주a) : ()는 계속사업 권역수임

주b) : 2007년도에 1단계 미착수권역 8개와 2단계 16개 권역 착수

주c) : 2008년도 1단계 160개 권역 완료 예정

1단계 사업에는 160개 권역에 5,431억원 투자목표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시·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은 <표 2-2>와 같다. 전남이 57개 권역에 1,904억원으로 전체 투자금액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경남이 32개 권역에 1,109억원, 경북이 15개 권역에 513억원 순으로 투자되고 있다.

<표 2-2> 1단계 시·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권역, 백만원)

시·도	총 계획		실적(1994~2006)		2007실적		2008계획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물 량	사업비
계	160	543,170	152	526,531	8	14,000	(8)	14,000
부 산	2	7,000	1	4,028	1	1,750	(1)	1,750
인 천	6	20,018	6	19,417				
울 산	3	10,577	3	10,577				
경 기	2	9,270	2	9,270				
강 원	13	43,710	13	44,972				
충 남	10	34,005	10	35,257				
전 북	7	23,648	7	23,487				
전 남	57	190,460	53	183,804	4	7,000	(4)	7,000
경 북	15	51,320	15	50,573				
경 남	32	110,902	29	100,698	3	5,250	(3)	5,250
제 주	13	42,260	13	44,448				

자료 :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주 : ()는 계속사업 대상권역수이며, 1단계 160권역 지원계획 및 실적임

제주지역인 경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1994년부터 2007년도까지 14개 권역·93개 어촌계에 494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며, 지원실적 및 계획은 <표 2-3>과 같다. 사업내용은 주로 어항시설 및 정비, 공동작업장시설, 잠수탈의장시설 및 정비, 어촌회관 및 수산물직매장 등이 추진되고 있다.

<표 2-3> 제주지역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권역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백만원)	어촌계수	사업량	주요 시설명
계	14권역	49,448	93개	231건	
제주시 구좌	1994~1995	2,530	4	15	축양장, 유어시설 등
서귀포시 모슬포	1995	3,500	5	26	선착장, 진입로 등
제주시 한경	1996	3,500	7	22	민박, 낚시선 등
제주시 추자	1996	3,500	5	19	숙박, 회관 등
서귀포시 성산동부	1997	3,500	4	8	직매장, 유어시설 등
서귀포시 남원서부	1997~1998	3,500	5	11	종합센터, 직매장 등
제주시 애월	1998~2000	3,500	7	14	진입로, 작업장 등
서귀포시 성산서부	1999~2001	3,454	5	14	종합센터, 육상양식장 등
서귀포시 남원동부	2000~2002	3,174	8	19	위판장, 소공원 등
제주시 조천	2001~2003	3,940	13	23	창고, 어촌계사무실 등
서귀포시 표선	2002~2004	3,350	11	16	어촌계사무실, 탈의장 등
제주시 우도	2003~2004	3,500	8	25	복지회관, 탈의장 등
제주시 한림서부	2005	3,500	5	10	복지회관, 방파제 등
제주시 구좌서부	2007~2009	5,000	6	9	소공원, 방파제 등

자료 :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2) 어촌체험마을 조성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어업체험을 위해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민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조성 계획은 <표 2-4>와 같다.

2001~2013년도까지 전국 112개소의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703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의 관광기초기반시설과 컨설팅, 주민교육훈련, 팸플릿 제작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내에는 2006년도까지 <표 2-5>와 같이 6개소에 32억원이 투자됐다.

2006년도까지 112개 마을 중 76개 마을에 497억원을 투자한 결과 기존 어촌관광사업(숙박, 횃집 등)이 외지자본의 상업적 성격이었던 것에 비해 체험관광은 현지 어업인이 직접 어업현장에서 체험중심으로 운영하므로 어촌지역의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가능하고 경관감상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어업·생태·해양 레크레이션 체험 등을 통한 창조적인 여가활동으로 어촌지역과의 교류확대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어촌 찾아가기 행사를 통하여 어촌을 방문한 도시 관광객의 어촌관광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2005년 83%에서 2006년에는 6%가 증가한 89%로 나타나 체험마을 운영이 정착화 되면서 만족도가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표 2-4> 시·도별 어촌체험마을 조성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12	2	5		10	9	11	6	31	10	18	10
2006년까지	76	2	4		8	6	7	4	20	7	12	6
2007년추진	11					1			6		4	
장래조성계획	25		1		2	2	4	2	5	3	2	4

자료 :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표 2-5> 제주지역 어촌체험마을조성 실적

(단위 : 백만원)

시행연도	사업위치	사업비	사업내용
계	6개소	3,242	
2001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742	안내소, 소공원, 해안건강산책로
2002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	500	어촌진입로확장, 소공원조성, 안내판설치
2003	서귀포시 하예동	500	어촌진입로, 종합안내센터, 종합안내판
2004	서귀포시 강정동	500	“원”체험장, 종합안내센터, 해변산책로
2005	서귀포시 보목동	500	안내센터, 주차장, 체험어장조성, 전시장
2006	서귀포시 중문동	500	전망대, 진입로, 안내소, 주차장

자료 :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3)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

어촌체험마을 컨설팅지원사업은 어촌체험마을 운영 시 어업인이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문가의 도움(컨설팅)을 받아 해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촌체험마을사업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어촌체험마을 특성을 감안하여 마을여건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위해 1마을 1전문가 컨설팅을 목표로 추진하고 사업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의 효율성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1997년도까지는 어촌체험마을 13개소에 국비 1억2천만원이 지원됐고, 2008~2012년 이후까지는 99개소에 국비 1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계획은 <표 2-6>과 같다.

<표 2-6> 연도별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07년까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사업량(개소)		13	13	15	18	20	33
사업비	계	120	148	180	210	240	396
	국비 지방비 자담	120	148	180	210	240	396

자료 :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자료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수산물의 수입개방 확대와 함께 어업자원의 감소 등으로 어가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수준에 크게 미달하고 있어 정부에서는 어촌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어촌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소득증대 방안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규복(1990)은 「한국 농어촌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대도시 편향적인 국토개발정책과 공업부문 중심의 불균형 성장정책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도·농간 발전격차의 누적과 그로 인한 농어촌 인구의 대량 유출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진정한 농어촌발전을 지향하는 농어촌개발은 단순한 소득이나 생산기반의 향상뿐만 아니라 도로, 통신, 교육, 의료, 문화 및 복지시설 그리고 사회조직과 제도를 포함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농어촌개발의 이론을 토대로 바람직한 농어촌개발의 기본방향 및 방안을 ① 개발내용의 다양성 확보 ② 농어민의 주체성 제고 ③ 농어촌 기능의 확대 및 지위향상 ④ 새 농정의 좌표 설정 ⑤ 농민연금제 신설을 제안하였다.

서종혁(1995)은 「선진 농어촌 2000년, 정책사업 대심포지엄」에서 농어촌지역의 신개발 전략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농촌개발과 관련하여 수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고 다양한 법령이 제정되어 왔으나 농촌개발정책과 제도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농촌개발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형성은 기존의 불합리를 시정하는 일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농업·농촌·농민을 둘러싼 여건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개발수요나 정책제도개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농어촌 개발전략을 ① 통합적 계획과 개발 ② 정보화 등 새로운 여건에 대응한 정책 프로그램 개발 ③ 대상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계획과 개발 ④ 환경 보전적 개발을 제시하였다.

이기옥(1998)은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연구」에서 농어촌개발의 문제점으로 농어촌지역에 대한 현실적 이해부족과 사업추진체계의 방만 등을 제시하면서 농어촌 지역개발의 발전방향을 ① 농어촌정비의 통합시행 ② 주민자율에 의한 사업시행 ③ 중심마을의 거점화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황기형·이승우(2000)는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어촌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내 어촌에서 이루어지는 관광활동은 바다 낚시, 활어회 식사, 해수욕, 경관감상 등 네 가지 활동이 중심이 되는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문제점은 쓰레기 발생, 해양환경 오염, 교통 혼잡 및 주차난 등과 같이 주로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어촌주민이 주도적으로 관광개발을 추진하고자 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투자자금 부족과 기반시설 미비, 그리고 토지사용과 관련한 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고 있다. 국내 어촌관광개발의 문제점은 어촌의 미활용 자원을 연계한 지역사회 단위의 개발모형 부재, 어촌관광 수요에 대응하는 어촌기반시설에 대한 정비노력 부족, 어촌지역사회의 주체적인 관광개발 능력 부족, 관광개발에 대한 어촌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체계 미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주민참여를 통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정책의 방향은 ① 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사업의 적극적 실시 ② 어촌관광개발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식 도입 ③ 관광자원으로서의 효용을 고려한 어촌 기반시설의 정비 ④ 유어장 제도의 확대 추진 ⑤ 어촌관광개발 시범사업의 확대 ⑥ 어촌 민박시설에 대한 지원 및 인증제도 도입 ⑦ 어촌관광 실태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제시하였다.

옥영수(2004)는 「어촌의 구조변화와 향후 어업 및 어촌정책 방향 연구」에서 현행 어촌개발 정책의 문제점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어장·어항·어촌이 분리 기능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그동안 어촌종합개발사업에 투자된 사업내용이 생산기반시설에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어촌관광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어촌관광 주도인력의 부족과 어촌관광 동기 유인책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향후 어촌개발의 전개방향은 어촌계원의 수가 줄어들고 동시에 어촌계원의 전업화 진전은 수산물 판매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고, 어선어업화의 진전은 소규모 어항개발에 대한 수요를 높이게 되며,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원래 구상대로 종합개발사업을 실시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승우·홍장원·한광석(2004)은 「수산시설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수산시설의 관광자원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도시와 어촌의 교류 공간 인식부족, 어촌·어항 관광기능의 미활용, 수산시설에 대한 국민관광 욕구의 미반영 등을 지적하면서 수산시설의 관광자원화 및 활용 방안으로 ① 인공어초의 관

광자원화 방안 ② 수산종묘생산시설의 관광자원화 방안 ③ 방파제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 ④ 해상가두리 시설의 관광자원화 방안 ⑤ 어촌관광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소득 증대 ⑥ 도시와 어촌의 교류 활성화 ⑦ 관광자원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성귀·홍장원·이성우·최지연(2007)은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 살기 좋은 어촌, 가고 싶은 바다조성에 관한 연구」에서 연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환경오염, 태풍 등 재해, 연안침식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어촌은 경쟁력 약화에 따른 인구 및 소득감소, 문화, 복지, 교육 등의 약화가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항만·어항은 난개발, 관광자원화 미흡, 향후 정비방안 미흡 등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살기 좋은 어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 문화, 복지 등 정주여건의 개선이 요망되었고 아울러 소득증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소득증대는 농어업 생산을 통한 가공·유통 등의 부가가치 개선, 미이용·저이용 자원 개발을 통한 어촌관광 등 농·어업외 소득증대 방안이 제시되었고, 아울러 주민들의 연대의식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방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홍장원·이윤정(2008)은 「지역축제를 통한 연안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에서 연안지역 축제의 문제점으로 해수욕장 등이 해양관광의 계절성을 더욱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활용하지 못하고 다른 계절에는 해양관광지를 유희공간으로 놔둔다는 문제와 해양관광 축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유형별로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점과 해양관광 축제에서 축제의 성격과 상관없이 노래자랑, 가요제, 대동소이한 수산물시식 등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어 해양스포츠 활동 등 바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축제는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연안지역 해양관광 축제의 발전방향을 ① 독창적인 축제 테마의 발굴과 계절성 극복 ② 지역축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제도마련 ③ 철저한 기획과 홍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의 기존 선행연구와 차이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내 어촌계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어촌계의 개발 여건, 소득사업 운영 실태, 각종 사업추진시 문제점, 어촌계 방문 관광객의 실태 등을 파악하여 어촌계 활성화 정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요약 정리하면 <표 2-7>과 같다.

<표 2-7> 선행연구 요약

연구자	연구주제	분석의 주요측면	분석결과
이규복 (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농어촌개발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개발의 기본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내용의 다양성 확보 농어민의 주체성 확보 농어촌 기능의 확대 및 지위향상 새농정의 좌표 설정 등
서종혁 (19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지역의 신개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합리적인 농어촌 개발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적 계획과 개발 정보화 등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 개발 환경 보전적 개발 등
이기옥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지역개발의 발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정비의 통합시행 주민자율에 의한 사업 시행 중심마을의 거점화 개발
황기형외 (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참여를 통한 어촌 관광개발의 활성화 정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촌주민대상 교육사업 적극적 실시 다양한 어촌관광개발 지원 방식 도입 어촌관광개발 시범사업의 확대 어촌관광실태 기초자료 확보 등

<p>옥영수 (20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의 구조변화와 향후 어업 및 어촌 정책 방향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개발의 전개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물 판매시스템의 변화 · 어선어업화의 진전은 소규모 어항개발에 대한 수요 증가 ·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사업 목적대로 종합개발 사업으로 추진
<p>이승우외 (200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시설의 관광 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시설의 관광자원화 및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어초 및 수산종묘 생산시설 관광자원화 방안 · 방과제를 활용한 관광 자원화 방안 · 어촌관광 프로그램의 다양화 · 도시와 어촌의 교류 활성화 등
<p>김성귀외 (20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 어촌·어항 등 공간 분야의 향후 정책 추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문화, 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 농어업 생산을 통한 가공·유통 등 부가가치 개선 · 어촌관광 등 소득증대 방안 · 주민 연대의식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방안
<p>홍장원외 (200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축제를 통한 연안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지역 축제의 발전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창적인 축제테마의 발굴과 계절성 극복 · 지역축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제도마련 · 축제 전문인력 양성

자료 : 필자가 선행연구를 연도별로 구성한 것임

제4절 연구분석의 틀

제주지역 어촌계 활성화 정책의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촌계의 실태와 여건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의 분석의 틀은 어촌계의 내부자원 측면과 외부자원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만들었다. 특히 내부자원 측면에서는 어촌주민의 역량 강화, 어촌 물적 기반의 확충, 어촌계 관리운영의 강화 등 세 가지 구성요인으로 살펴보았다. 이 세 가지 측면을 선택한 배경은 어촌주민의 역량 강화는 어촌주민의 의식변화와 교육기회의 확대 등이 중요하기 때문이며, 어촌 물적 기반의 확충은 어촌소득 향상을 위해 어촌계의 어업의 소득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촌계 관리운영의 강화는 지역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어촌체험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어촌계 운영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자원의 주된 구성요인으로 삼았다.

어촌계 외부자원 측면에서 볼 때는 내부자원 측면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신 관광자원의 융합 및 개발 필요성, 지원 및 협조체제의 강화 등 두 가지 구성요인으로 살펴보았다. 신 관광자원의 융합 및 개발은 앞으로의 여건 변화와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기존 시설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하여 어촌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나갈 수 있고, 지원 및 협조체제의 강화는 네트워크 등이 잘 정비되었을 경우 어촌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외부자원의 주된 구성요인으로 삼았으며, 이상에서 구성요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분석틀을 정리하면 <표 2-8>과 같다.

<표 2-8> 분석의 틀 구성요인

주요 측면	구성요인
어촌계 내부자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촌 주민의 역량강화 ○ 어촌 물적 기반의 확충 ○ 어촌계 관리운영의 강화
어촌계 외부자원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 관광자원의 융합 및 개발 필요성 ○ 지원 및 협조체제의 강화

자료 : 필자가 분석의 틀을 구성한 것임

제3장 제주지역 어촌의 현황 및 실태분석

제1절 어촌계 현황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하고 있다. 어촌계는 구역 안에 거주하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1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하고 있다.

2007년도 말 현재 전국의 어촌계수는 <표 3-1>과 같이 1,972개로서 수협중앙회 어촌계 분류평정결과⁸⁾ 복지어촌계 157개, 자립어촌계 602개, 성장어촌계 1,213개로 나타났다. 호당 평균소득은 2천311만6천원으로, 2006년도 2천275만3천원 대비 1.5%가 증가 하였다. 제주도에 100개의 어촌계가 있으며 이중 복지어촌계 14개, 자립어촌계 65개, 성장어촌계는 21개로 조사됐다. 호당 평균소득은 2천414만5천원으로 전국평균 보다 4.4%가 높게 나타났다.

<표 3-1> 전국 어촌계 현황

구 분	지구별수협수	어촌계수	발전수준(개소)			호당평균 소득(천원)
			복 지	자 립	성 장	
합 계	72	1,972	157	602	1,213	23,116
경 인	5	104	14	31	59	21,758
강 원	9	77	10	25	42	23,557
충 남	8	138	7	44	87	25,538
전 북	4	64	2	15	47	22,150
전 남	16	854	67	224	563	24,055
경 북	8	156	15	66	75	18,030
경 남	14	438	28	132	278	26,559
부 산	2	41	-	-	41	22,248
제 주	6	100	14	65	21	24,145

자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내부자료(2007 어촌계분류평정 및 현황. pp. 46~48)

8) 발전수준(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7 어촌계 분류평정 및 현황. p.1)

- 복지 : 지속적인 성장결과 경영기반이 우수하여 계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어촌계
- 자립 : 경영기반이 취약단계를 벗어나 스스로 어촌계 경영을 도모해야 할 어촌계
- 성장 : 신설 또는 경영기반이 취약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어촌계

제2절 조사의 설계 및 분석

본 설문조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100개 어촌계의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미리 작성된 조사표에 따라 우편조사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설문내용은 크게 어촌활성화 사업추진 시 문제점, 어촌계 소득사업의 운영 및 관리실태, 어촌발전의 저해 요인, 관광객 방문에 대한 주민의식 등이다.

설문조사 기간은 2008년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어촌계장 1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당초 7월 5일까지 설문조사 계획이었으나 대부분의 어촌계장들은 1차 산업에 종사하면서 어촌계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일부 어촌계장은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 설문조사 기간이 연장되었으며, 설문조사표 회수를 위해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설문조사표는 66부를 회수하는데 그쳤으며, 설문조사표 회수내역은 <표 3-2>와 같다. 본 설문조사표를 가지고 교차분석이나 고급분석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분석결과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표 3-2> 설문조사표 회수내역

계	제주시수협	서귀포수협	한림수협	추자도수협	성산포수협	모슬포수협
어촌계(100개)	33	19	18	5	13	12
응답66명(%)	20(30.4)	16(24.2)	9(13.6)	4(6.1)	9(13.6)	8(12.1)
응답비율(%)	60.6	84.2	50.0	80.0	69.2	66.7

자료 : 필자가 수협별로 응답비율을 정리한 것임

1. 어촌주민의 역량강화

1) 어촌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여부

어촌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90.9%, 없다고 대답한 비율이 9.1%를 보이고 있어, 어촌계 나름대로 어촌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어촌계 주도의 어촌관광 등 사업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

어촌계에서 어촌관광 등 개발사업을 추진 할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은, 어촌계 자

체자금의 부족하다는 대답이 65.2%,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다고 대답한 비율이 22.7%, 어촌계원 참여도가 낮다가 6.1%로 나타났으며, 반면, 행정절차가 복잡하다와 어촌계 사업수행 능력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은 각각 3%에 불과하였다. 조사결과 어촌계 주도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업자금의 부족과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분석된다.

3) 마을어장내 체험활동(바닷잡이⁹⁾ 등) 허용에 대한 의견

마을어장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어장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대답이 77.3%, 지역주민과의 화합차원에서 전 어장 허용이 필요하다는 대답이 6.1%였다. 반면, 자원관리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어촌계원이 아니면 누구든지 입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는 대답이 15.1%, 무응답은 1.5%였다. 조사결과 마을어장 일부 허용에 대하여는 대체로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2. 어촌 물적 기반의 확충

1) 어촌계에 지원된 소득사업의 종류

어촌계에 지원된 소득사업의 종류는 민박시설 13.6%, 수산물 직판장 13.6%, 활어횃집 또는 향토음식점 9.1%, 체험어장(유어장 등) 6.1%, 육상양식장 3.0% 순으로 나타났고, 소득사업이 없다고 대답한 어촌계는 54.6%를 보였다. 소득사업이 있다고 대답한 어촌계 중 두 종류 이상의 소득사업을 운영하는 곳은 23.3%로 조사됐다.

2) 어촌계 소득사업의 운영 및 관리 상황

어촌계에 지원된 사업 중 소득사업의 경우, 잘 운영되고 있다 26.7%,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다 46.7%, 그저 그렇다 3.3%, 다소 미흡하다 6.6%,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16.7%를 보이고 있다. 어촌계 소득사업은 대체로 잘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은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9) 바닷잡이란 보통 간조시에 바다에 들어가 보말, 게, 미역, 성게 등 해산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것을 말한다.

3) 어촌계 소득사업 운영이 잘 안되는 원인

소득사업 운영이 다소 미흡하다와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고 대답한 어촌계는 그 이유를, 사업내용과 입지여건이 안 맞아서 42.9%, 어촌계원 참여의지 부족 42.8%, 어촌계 경영능력 부족 14.3%를 보였다. 향후 어촌종합개발 및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지역여건, 어촌계의 사업추진 의지 및 경영능력, 재정상태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4) 꼭 해보고 싶은 소득사업의 종류

어촌계에서 가장 선호하는 소득사업은, 육상양식장 21.2%, 활어횃집 또는 향토음식점 16.7%, 어촌 체험장 13.6%, 관광낚시터 조성 10.6%, 수산물 가공시설 10.6%, 관광유람선 10.6%, 수산물직판장 10.6%, 어촌민박 4.6%, 무응답 1.5% 순으로 나타났다. 육상 양식장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는 청정 자연환경에서 생산되는 넙치가 다른 사업에 비해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3. 어촌계 관리운영의 강화

1) 어촌관광사업 등 추진 시 어촌활성화 기여도

어촌관광개발사업이 어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촌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53.0%, 조금 기여할 것이다 39.4%, 그저 그렇다 6.1%,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다 1.5%였다. 반면, 전혀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는 없었다.

2) 어촌관광사업이 어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이유

지역특산품의 판매액 증가가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어촌체험관광 입장료 수입 29.5%, 식당소득 증가 13.1%, 지역주민의 자궁심 채고 9.8%, 민박소득 증가가 1.7%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결과 어촌관광사업이 이루어지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의 판매가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소득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3) 어촌계의 3년전과 소득비교

3년 전에 비해 어촌계 소득이 10~30%정도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7.6%, 10% 이내로 늘었다 4.5%, 3년 전과 비슷하다 12.1%, 10%정도 줄었다 15.2%, 10~30%정도 줄었다 28.8%, 30%이상 줄었다가 31.8%를 응답하고 있다. 소득이 줄었다는 응답이 많은 이유는 자원감소 및 경기침체에 따른 어가하락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4) 어촌의 미래에 대한 전망

어촌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7.6%, 밝다 9.1%, 보통이다 31.8%, 어둡다 37.9%, 매우 어둡다 13.6%로 나타났다. 어촌의 미래가 어둡다고 대답한 비율이 다소 많은 이유는 고유가¹⁰⁾에 따른 연근해 어업의 경영악화와 전반적인 경기부진 등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4. 신 관광자원의 융합 및 개발 필요성

1)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점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주민의 공동투자 27.3%,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종합개발 21.2%, 어업체험 및 체험어장 개발 21.2%, 관광객 편의시설 및 정비확충 19.7%, 우수한 지역리더 육성 6.0%, 관광객 유치 홍보전략 4.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촌관광사업 추진 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정부와의 공동투자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 계절별 어촌계 방문 관광객 수

계절별로 어촌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추정해 달라고 질문한 결과, 봄철인 경우 평일에 하루평균 35명, 주말에는 7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름철인 경우는 평일 58명, 주말은 144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을철인 경우에는 평일 51명, 주말 92명이 조사되었고, 겨울에는 평일 31명, 주말 58명으로

10) 설문조사 기간인 2008.7.4일 국제유가는 중동산 두바이유의 경우 1배럴당 140.70달러로서, 2007년도 68.40달러에 비해 2배이상 급등하여 어촌의 미래가 어둡다는 대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며, 2008.11.14일 현재 국제유가는 49.51달러로서 2007년도 보다도 28%가 하락하여 조사시점 및 여건변화에 따라 설문내용별 응답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조사되었다. 이는 대답한 어촌계의 방문객수를 평균해서 계산한 수치이다. 본 조사는 어촌계장의 임의적인 추측에 의해 조사한 것이므로 실제 어촌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유명 관광지가 아니어서 관광객이 방문하지 않거나 대답을 하지 않는 어촌계도 다수 있었다.

3) 관광객 방문 시 주민 대응 태도

관광객 방문에 대한 지역 주민의 대응에 대해 질문한 결과, 지역주민들은 관광객 방문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매우 반갑게 맞이한다 51.5%, 약간 반갑게 맞이한다 15.2%, 그저 그렇게 맞이한다 25.7%, 무응답은 7.6%였다.

4) 관광객 방문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외부 관광객이 어촌을 방문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쓰레기 처리문제로 대답한 비율이 50.0%, 마을주변 교통체증 및 주차시설 문제 18.2%, 해양환경 훼손 16.7%, 지역 미풍양속 훼손 1.5%, 무응답은 13.6%였다. 조사결과 쓰레기 처리문제와 주차시설 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미풍양속 훼손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 3년 전과 비교한 어촌계 방문 관광객 수

3년 전에 비해 어촌계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두 배 이상 늘었다 7.6%, 50~100%정도 늘었다 4.5%, 10~30%정도 늘었다 21.2%, 10% 이내로 늘었다 16.7%, 10%정도 줄었다 7.6%, 10~30%정도 줄었다 9.1%, 30~50%정도 줄었다 1.5%, 50%이상 줄었다 3.0%, 잘 모름(해당없음) 28.8%였다. 이는 어촌계장의 추측에 의한 대답이지만 어촌지역에 대한 도시민의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지원 및 협조체제의 강화

1) 어촌발전의 저해요인

어촌발전의 저해 요인은, 소득기반시설 부족 30.3%, 어촌계 자산 부족 24.2%, 어

촌계주변 관광자원 부족 19.7%, 어촌계원 참여 부족 12.1%, 어항시설 미비 9.1%, 어촌계 경영능력 부족 4.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어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소득사업의 지원확대와 어촌계 자체의 자부담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어촌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

어촌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투자가 34.8%로 가장 높고, 어촌자원의 다양한 활용 31.8%, 어촌의 개방 18.2%,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7.6%, 지역 브랜드 창출 4.6%, 인적자원의 교육·육성 3.0%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어촌계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어촌개발사업에 정부지원의 확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관계기관 등에 바라는 사항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종묘방류사업 및 해중립 조성사업의 확대지원, 수산시설사업 추진 시 국유지 또는 공유수면 활용 허용, 어촌계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3절 문제점 및 시사점

제주특별자치도내 어촌지역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내부적 요인 중 어촌주민의 역량강화 측면은 첫째, 어촌 관광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자금의 부족과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어촌계의 자구노력의 병행과 더불어 정책적으로 어촌개발을 위한 시설부지 이용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관광객이나 도시민들이 바닷가에서 바닷잡이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마을어장에 입어하는 잠수들과의 다툼이 종종 있어왔다. 이번 조사에서 마을 어업권자인 어촌계장 대부분이 마을어장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부어장은 개방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 어촌체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잠수 어업인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 홍보와

바릿잡이 어장으로 개방하는 어촌계에는 자원조성사업 지원 등이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어촌 물적 기반의 확충 면에서 볼 때 소득사업의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소득사업은 주로 민박시설, 수산물직판장, 식당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관광객들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면에서 볼 때 일부지역은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지역여건이나 어촌계 경영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어촌계 관리운영의 강화 측면은 어촌계는 마을에 비하여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어촌계 운영에 애로가 많기 때문에 어촌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외부적 요인 중 신 관광자원의 융합 및 개발 필요성 부문은,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역주민의 공동투자와 어촌종합개발, 체험어장개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어촌관광개발사업 추진시 정부지원의 확대가 요구된다. 지원 및 협조체제의 강화 부분에서 볼 때는 첫째, 대부분의 어촌계는 소득기반시설과 자산부족, 그리고 관광자원의 부족하다. 이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촌개발 정책 시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시의 적절하게 정책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어업인들은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종묘방류사업과 해중립 조성사업 등의 투자확대를 바라고 있어 정책당국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제4장 국내·외 어촌사업 및 어촌개발정책 사례분석

제1절 국내사례¹¹⁾

1. 미라자유품관리공동체

1) 사업과 현황

전남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에 위치한 미라어촌계는 1997년에 이미 “마을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양식기술을 체계화 했으며, 2000년 전북 도난 등에 따라 공동자유품방범대를 구성하여 몇 가지 규칙을 만들었고, 어촌계 내 공평한 어장분배를 위해 기존에 있던 규칙 등을 발전시켜 마을자치법 등 자율운영체계를 조직하였다.

2002년에는 전북양식 자유품관리공동체를 구성하여 기존에 있던 어촌계, 청년회, 어업인 후계자회를 통합하여 조직을 일원화시켰고, 2003년에는 3억원의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어장정리사업을 통해 공동체 개인별 어장분배 작업을 완료하였다.

2003년에 자유품관리공동체로 선정되어 2억원을 지원받아 마을어장 내 전북 중간패 10만 마리를 살포하였으며, 2005년에는 자유품관리공동체로 추가 선정되어 지원받은 3억원으로 물양장, 직판장, 크레인, 선별기 등 전북 공동판매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었다.

미라어촌계의 전북양식 어가 수는 1992년에 10가구, 1998년에 20가구, 2002년에 60가구, 2006년에 76가구로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는 전북양식의 활기에 따라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 또는 자식들이 돌아와 전북양식을 시작한 결과이다. 현재의 전북 양식공동체는 76가구로 연간 300~400톤의 전복을 생산하여, 전복어가의 평균 소득이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판매장에는 간사 1인과 경리 1인이 고용되어 전체 판매 업무를 보고 있다.

2) 성공요인

미라자유품관리공동체는 공동체의 개별어가에서 생산된 전복을 공동 판매하여 공

11)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12. “바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다(수산업, 어촌사업 성공사례집), pp. 95~155.

등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사례이다.

생산에 있어서는 해조류 양식장에서 전복양식의 확대와 난립으로 어장환경이 악화되고 해난사고의 위험이 상존해 있어 16ha의 양식장에 대해 시설물 재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어장 간 100미터 거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였다. 시설량이 과다할 경우 1차 경고 이후에도 시정이 없으면 강제철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장환경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출하 시에는 협의 하에 순번을 정해서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어가가 먼저 출하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리고 출하자별 판매량의 0.2%를 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전복양식 어촌계로서는 유일하게 직판장을 운영하면서 노화수협의 직원이 365일 파견을 나와서 출하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0.1%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동판매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크기 당 단가 등 표준화된 품질을 출하하는데 도움을 주어 상품판매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400톤, 380톤의 전복을 판매하였으며, 판매금액은 150억원, 114억원이었다. 판매형태는 중간 판매상을 통하는 경우가 50%, 택배 40%, 직판 10%의 비중으로 타 생산업자들과 달리 택배판매 비중이 매우 큰 특징을 갖고 있다.

미래어촌계의 성공에는 전복 해상양식기술을 개발하려는 집념이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국내 처음으로 전복 해상가두리양식에 성공하였으나 전복양식 시설물 밀식으로 생산성이 저하되고 개별판매에 따른 유통업체 간의 농간으로 가격이 불안정해 졌을 때 자율관리공동체를 구성하여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생산 관리 및 유통구조를 개선한 것이 향후 공동판매를 가능하게 한 출발점이 되었다. 자율관리공동체에서 진행한 어장정리사업은 생산의 효율성을 높였을 뿐 아니라 전복의 폐사를 최소화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공동판매에 있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화수협과 협의하여 수협직원이 매일 실적을 기록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공동판매 시스템을 견고히 하고, 유통업체에 대한 협상력을 가지고 공동체 출하량을 일정부분 조정할 수 있어 제값 받기가 가능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동체는 고가의 전복 도난을 막기 위해 4인 1조로 어장 감시조를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서치라이트 1대와 감시초소 16.5㎡를 마련하여 이용하고 있어 현재까지는 도난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3) 평가와 향후과제

미라자울관리공동체의 노력으로 인해 불법시설물 설치를 근절하는 등 어장환경이 개선되어 생산성이 증대되었으며, 공동출하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가격안정을 이루었고, 어장 감시조를 운영하여 도난방지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가소득을 연간 1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타 전북생산자들과 달리 택배 판매가 40%에 달하는데도 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체계적인 홍보전략 및 판매 전략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약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2. 물치어촌계

1) 사업과 현황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에 위치한 물치어촌은 대표적인 관광어촌이다. 물치어촌계를 구성하는 36명의 어촌계원은 대부분 어선어업으로 가자미, 넙치, 도루묵 등을 어획하여 위판하거나 횃집에 직접 판매하여 가구당 3,000만원을 상회하는 어가소득을 올리고 있다.

물치어촌은 어촌종합개발사업 수익시설 지원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평가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1998년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물치항 주변의 난전에서 어업인들이 회를 판매하다 보니 생선 잔여물과 냄새로 환경이 비위생적이었으며 동시에 무질서한 상행위가 성행했던 곳이었다. 하지만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 36개의 점포와 기계실, 창고, 오수정화조 등 기반시설을 갖춘 활어회 센터를 지원받아 조성하면서 어업외 소득이 증가하고 계원들 간의 협동심과 조직력이 강화되는 등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다.

특히, 모든 어촌계원에게 점포를 무상 임대하여 영업을 하게 하면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였고 물치항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되면서 어업

소득뿐 아니라 어업외 소득도 이들의 중요한 소득원이 되었다.

물치어촌은 정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로 볼 수 있다.

2) 성공요인

물치어촌의 성공기반은 단연 어촌종합개발사업이었다. 총사업비 11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36개의 횃집을 조성하고, 횃집운영은 어촌계원들이 무상으로 임대받아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였다. 3층으로 건립된 횃집센터의 1층에는 기계실, 창고, 오수정화조 등 기반시설이 조성되었고, 2층과 3층에는 각각 18개 횃집이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다.

물치어촌계는 자체적으로 「활어장내 질서 확립 규칙」 12개 조항을 만들고 위반 시 영업정지를 시키는 데 합의함으로써 규칙의 자율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36개의 점포가 2층과 3층으로 나뉘어져 있어 3층의 매출실적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매년 2층과 3층의 위치를 바꾸는 등 합리적인 운영방식을 통해 어촌계원 간의 협동심과 단결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점포당 평균 매출 1억원 이상의 어업외 소득을 창출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어촌계 발전기금을 마련하고 이를 시설 재투자에 사용하여 추가 임대수입을 올리거나 자체적으로 어촌계 회관을 조성하는 등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물치어촌계의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최고의 입지여건

물치어촌은 다양한 성공요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입지여건이 좋다. 수도권 관광객은 대부분 영동고속도로 빠져나와 강릉-양양-속초로 이어지는 7번 국도를 따라 이동하는데 물치어촌은 7번 국도변에 바로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탁 트인 조망과 매우 용이한 접근성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 또한, 활어회 센터를 중심으로 전방과 후방에 물치항과 넓은 유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다.

(2) 직접 잡은 수산물을 저렴하게 판매

각 점포별로 어선어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산의 경우 직접 잡은 수산물을 관광객에게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물치어촌계 활어센터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은 수협이 위판가격보다 높게 제공되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신선한 활어를 일반 횡집보다 훨씬 저렴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호 윈윈(win-win)하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어항이나 근처 바다경관이 좋은 곳에서 회를 즐기려는 관광객에게는 소포장하여 판매함으로써 그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3) 고객중심사고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려는 자발적인 노력

물치어촌계는 활어회 센터를 아용하는 고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협소한 공간에서 많은 점포가 과열경쟁을 하다보면 호객행위, 손님과의 언쟁, 음주로 인한 싸움, 쓰레기 처리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물치어촌계는 활어장내 질서 유지와 고객서비스를 위해 모든 계원 부녀자들이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활어장내 질서 확립 규칙」을 만들어 모두에게 서명을 받고 이를 위반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수단도 마련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들로 어업인들도 도시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보이고 있었다.

(4) 재투자를 통한 어촌공동체 발전 극대화

물치어촌의 활어회 센터는 각 어촌계원이 1개 점포씩 운영하고 있는데 남성들은 주로 어선어업을 통해 어업소득을 올리고, 어촌계원의 부녀자들은 횡집운영을 통해 어업외 소득을 창출한다.

특히, 어촌계내 발전기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어촌계 구관장 임대소득 연간 1억9천만원, 매운탕 2개소 임대소득 4년간 3억6천만원 등 재투자를 통해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마을회관, 쓰레기 보관장 자체건립 등 지역내 필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5) 합리적인 운영방식

활어회 센터내 2층과 3층의 매출 차이로 인해 어촌계원들이 3층에 입점하기를 기피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2층과 3층의 위치를 바꾸고 있다. 이와 같이 합리적인 운영방식으로 내부적인 갈등요인을 충분히 해소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공요소이다.

(6)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의 협동심

물치어촌은 활어회 센터 운영·관리를 위한 별도의 조직을 마련하지 않고 어촌계 조직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 어촌계장의 헌신적인 노력과 리더의 방향 제시에 대해 어촌계원과 부녀자들이 신뢰와 협력을 보여 주고 있다. 물론 처음부터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협력이 잘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어촌의 리더가 꾸준히 헌신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질적인 어업외 소득 효과와 함께, 합리적이고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 시스템을 경험하면서 어촌계원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신뢰감과 결속력이 형성되고 노력하면 잘 살수 있다는 내적 확산이 이 어촌의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3) 평가와 향후과제

물치어촌의 활어회 센터는 크게 4가지로 그 효과를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직접 어획한 수산물을 직접 판매함으로써 어업인의 수익이 향상되었다는 점이다. 이 효과는 어업인의 수익성 향상으로도 나타났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도 저렴한 수산물을 좋은 환경에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관광객 증가라는 결과도 가져다주었다. 둘째, 수산물의 위생상태가 개선되면서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물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어촌여성 유희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어촌지역 활성화를 이루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어촌계원 간 결속력이 강화된 점을 들 수 있다.

물치어촌계는 우수한 입지여건과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한 협력과 자발적 노력으로 활어회 센터를 통해 절반의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도 산재해 있다. 1999년부터 활어회 센터를 운영·관리해 오면서 전문적인 컨설팅과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물론 지금

까지 자구적인 노력과 규칙을 만들어 잘해왔지만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마인드를 배운다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활어회 센터를 조성한 지 8~9년 정도가 되면서 시설 노후화에 따른 근본적인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2층과 3층의 접근성과 실내공간이 협소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3. 정자어촌계

1) 사업과 현황

(1) 초기(1992~1996)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에 위치한 정자리 어촌계는 1990년 초 정자리 지역에 활선어를 소비하는 관광객이 모여들자, 지역주민 7~8명이 남정자리에 위치한 시장터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활어를 판매하였다. 그러나 이는 모여드는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비위생적이었으며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없어 교통 혼잡을 야기하였다. 게다가 연안어업의 쇠퇴로 어업소득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형편이어서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던 중, 정자어촌계 회원이며 활선어 중매(중간상인)를 하던 A씨는 노점상들이 시장터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는 데에 착안하여, 어촌계 단위로 공동 활어직판장을 만들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어촌계에서는, 매년 2월경에 열리는 어촌계 결산총회를 서너 달 앞당겨 1992년 말에 열고, 어촌계 계원들의 투표를 통해 어촌계 공동사업으로 위판장을 만드는데 합의하였다.

활어위판장의 시설비는 어촌계 공동으로 지출하였다. 즉, 정자어촌계의 공동어장에 공동사업으로 양식을 하여 나온 수익 3,800만원으로 660㎡에 달하는 위판장 시설비를 충당한 것이다.

그 대신, 위판장 종사 자격은 정자어촌계 계원으로 한정을 하고 계원 1가구당 1명씩만 위판장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에 시장터에서 활어판매를 하던 가구들에 대해서는 어촌계 계원 여부와 상관없이 위판장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다.

A씨는 위판장 설치 이후부터 최근까지 위판장의 관리를 맡아왔다. 1993년 4월, 어촌계 단위의 공동 활어직판장이 설치되자, 뒤이어 활어직판장의 양쪽 입구를 중심으로 초장집과 노점상들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특히, 초장집들이 위판장 주위에 밀집되어 있는 이유는, 활어직판장에서 활어회를 구매하는 관광객들이 대상 고객이므로, 공간적으로 활어직판장과 근접해야 하기 때문이다,

(2) 중기(1997~2006)

1997년 정부는 항구 주변의 난전을 획기적으로 정비하여 어촌의 마을 환경을 정비하고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활어직판장을 장려하고자 전국 10여개 어항을 대상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벌였다. 당시 정자어촌계도 정부의 어촌종합개발사업비 2억7천만원에 더하여 자담 3천만원을 투입하여 현재의 철골조 건물을 신축하였다. 좌우로 18칸씩 총 36개 코너가 설치된 활어직판장에서, 1개 코너에 어촌계원 2가구씩 72명의 어촌계원이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 시기에 활어직판장이 성공하면서 어촌계원의 희망자가 증가하였고 어촌계는 이를 수용하여 1996년 128명이던 어촌계원의 수가 2007년 현재 150명으로 증가했으며 어촌계 입회비 역시 상당액으로 증가되었다. 신입 어촌계원의 입회 조건과 활어직판장에 입주 재계약 조건은 매우 엄하고 까다로워 오늘날 활어직판장 성공의 기초가 되고 있다. 2007년 현재 활어직판장의 운영이 성공적인 지역은 정자를 포함한 2~3개 지역에 불과하다.

정자어촌의 이러한 성공에는 여러 가지 외적 요인이 있지만 숨은 일꾼을 한명 뽑으라면 활어 위판장 관리자 A씨가 아닐까 한다. A씨는 199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15년간 활어 위판장 관리자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정자어촌계장까지 맡고 있다.

(3) 현재와 미래(2007년 이후)

2007년 4월에 정자항 활어 위판장 주위에서 제1회 강동수산물 축제가 개최되었다. 이 축제로 활어직판장 운영과 미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며 장기적으로는 정자항 어항재개발사업(2005~2008년)의 영향을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전국 국가어항 중 10개 어항을 선정하여 어항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계획에 정자항이 포함되어 어항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완공되면 2008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어직판장에 직간접적으로 효과를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 현황

어촌계원이 어업의 소득인 활어직판장 운용소득을 분석한 결과, 35개 코너·85명의 어촌계원이 산출하는 순이익이 월간 2억2천7백만원으로 연간 27억2천4백만 원에 이른다. 이를 코너 당 평균으로 환산해 보면 어촌계원 1가구당 월간 순이익은 2백67만1천원에 이른다.

그 외에 활어 위판장에 참여하는 어촌계원 상당수가 초장집을 소유하고 있으나, 초장집은 어촌계원이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주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다.

정자항과 연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주변 관광지와 축제들도 많이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 인근에는 정자해변, 강동화암 주상절리, 광암 등의 관광지가 분포한다. 울산광역시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6종과 지방지정문화재 59종이 분포해 있으며, 정자항이 속한 북구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종, 지방지정문화재 10종이 있다. 그 외에 정자해변 재즈페스티벌, 정자해변 영화축제, 정자해변 해맞이축제를 개최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으며,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여 2004년에는 지역축제 관광객 수가 연간 10만명에 달했다. 2007년 4월에 처음 개최된 강동 수산물 축제에는 토요일 일요일 양일간 총 5만 명의 관광객이 참가하여 대성황을 이루었다.

정자어촌계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데는 외부적으로 울산시민의 소비양식이 변화된 것과, 내부적으로 어업소득의 감소와 정자리의 위치적 특성 등이 주요 요소로 작용하였지만 이것이 실제 경제활동 변화와 결합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사고방식은 똑 같지 않아서, 이 변화를 남보다 먼저 인식하고, 통일되고 조직된 전체적 행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의 지도가 필요하다. 지역개발과정에서 변화의 촉매자, 해결방안의 제시자, 과정의 운영자인 리더는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수요를 묶어 내고, 내적인 통합, 외적인 대표와 교섭, 그리고 정보와 쇄신의 매개자, 중개자로

서의 역할을 한다. 정자어촌계에서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과정을 통제하면서 리더의 역할을 한 인물이 A씨다.

10여 년간 도시생활을 경험한 북정자리 원주민 A씨는, 어업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무언가 다른 대책이 있어야만 고향을 지킬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992년 당시, 2~3년 전부터 시장터의 활어 노점으로 관광객이 몰리는 현상에 착안하여, 활어사업을 대규모로 벌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어촌계장 및 수협 지소장 등과 개인적인 자리를 마련하여 자신의 계획을 설득한 끝에 결국 어촌계의 공동사업으로 활어직판장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역의 경제성장은 리더의 존재만으로는 불가능하다. 리더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리더와 함께 행동할 수 있는 조직 또는 집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할을 한 것이 “어촌계”이다. 어촌계는 공동조업을 통해 소득을 올리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므로 어촌계 회원들은 어촌계의 결산총회에서 시행하기로 결정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였다.

위판장이 처음부터 성공적인 것은 아니어서, 위판장 설치 후 약 1년간은 수지타산이 전혀 맞질 않았다. 소규모로 행하던 영업을 대규모 시설로 옮긴 데다 널리 알려지지도 않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1994년 초 A씨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필요성을 깨닫고 홍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는 홍보물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홍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인맥을 활용한 제한적이고 한시적인 홍보였다. 현대중공업 및 현대자동차의 사내방송을 통해, 또는 대구 지방방송의 기사 등을 통해 활어직판장 홍보를 부탁한 것이다. 자본이 없으므로 현대나 방송국 측에 광고비를 지불하지는 못했지만, 주요 인물 몇몇을 불러 활어회를 무작정 대접한 것이 그의 방법이었다. 그 후 이곳이 현대 직원들의 회식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지방방송의 촬영 배경지가 되기도 하면서 활어직판장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였다.

A씨의 전략은 일종의 장소마케팅으로, 청청한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직판장을 운영한다는 장소 이미지를 홍보함으로써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어촌의 기능을 기존의 생산기능에서 판매기능으로 전환시키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킨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 주도의 성공적인 장소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활어 위판장을 설립한 후, A씨는 위판장의 관리를 맡게 되면서 명백히 지역의

리더로 자리를 굳힌다. 활어직판장의 자본 투자와 시설 관리는 공동으로 이루어 지지만, 영업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윤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 하는데, 관리자는 이러한 분쟁을 중재하는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활어직판장은 어민들이 관광관련 서비스업으로 용이하게 전업할 수 있는 기초가 되면서 소득의 원천을 이루고 있다. 이는 지역주민이 주도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장소 마케팅 전략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다른 어촌에서 이 사례를 적용하기 위해 견학 오는 경우가 많아 정자리의 장소마케팅 유형은 다른 지역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2) 성공요인

활어직판장 운영 원칙을 보면, 36개 코너의 입주계약을 2년마다 다시 체결하는데 입주했던 2년 동안 물의를 일으킨 계원은 재계약시 입주자격이 상실된다. 재계약시 코너의 위치도 원칙적으로 다시 정한다. 활어직판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은 어촌계원의 직계비속에 한하며, 자녀의 경우도 1명에 한정된다. 영업장 근무에 이러한 자격제한을 두는 것은 어촌계원이 직접 운영하지 않고 사람을 고용할 경우 과당 경쟁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능력껏 영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1개 코너에 어촌계원 2명이 동업하도록 하였으나, 최근에는 어촌계원 3명까지 동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동업자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활어직판장을 관리하는 관리인은 어촌계원 중에 1인이 선정되어 보안관 역할을 하는데, 현 어촌계장이 15년간 보안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철저한 고객 위주의 마케팅을 대전제로 하는 이곳 활어직판장의 중요한 전략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이 주문한 중량을 회를 뜨는 과정에서 절대로 속이지 말 것.

둘째, 동일 품질 동일 중량의 활어는 어느 코너에 가든 가격에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할 것. 즉. 처음 오는 고객이 어느 코너에서 구입하든 가격에 차이가 없음을 느끼도록 할 것.

셋째, 매장에 활어 입고 시에도 입고 가격 및 입고 수량도 균일하게 관리할 것.

3) 평가와 향후과제

어항재개발 투자가 완료되는 2008년에는 인근 판지어촌계에도 구이 타운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정지어촌계의 활어직판장과 보완관계를 유지하여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활어직판장 주변 상권개발로 고용증대 효과와 지역주민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활어직판장의 활성화는 강동 수산물 축제로 배가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결국 정자지역은 물론 강동권 전체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효과와 함께 향후 고려해야 할 과제들도 있다. 첫째는 활어자원의 감소 문제이다. 동해안 어자원 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자원 보호형 어업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는 활어직판장 건물을 현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울산광역시 북구청의 개발 건의가 정부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노력도 요구된다. 셋째로 정자삼거리 부근 농지를 확보하여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근 감포항이 개발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경주시 소재 감포항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총 320억원이 투입되어 방파제, 호안시설, 공원 등 어항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관광어항으로 개발된다. 경주시 관계자는 “감포항 개발이 마무리되면 경북 동해안 어업전진기지 역할뿐만 아니라 관광항구의 모습도 갖추게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감포항 개발이 마무리 되면 기존의 활어회 중심의 어촌 관광 상품이 활성화될 것이므로 정자항의 활어회 관련 관광상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 선감어촌체험마을

1) 사업과 현황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어촌관광이라는 마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한 선감마을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에 위치하고 있다. 선감마을은 원래 전형적인 반농반어의 부촌이었다. 예전에는 염전이 유명했으며 천혜의 갯벌에서는 많은 수산물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1989년 시화방조제가 건설되자 어장이 축소되면서 위기에 봉착했다. 한정면허로 어업은 지속하였지만 어장이 줄어들어 따라 어업소득이 뚜렷이 감소했다. 게다가 1990년 이후에는 수입수산물이

급증하면서 마을의 주 생산물인 바지락의 판로를 찾는데 애로를 겪게 되었으며, 국민의 소비패턴 변화로 김장용 굴 수요가 줄면서 어업인들은 더욱 어려웠다. 이때 어업인 수가 크게 줄었고 어업세력도 약해졌다. 현재 마을어업권은 바지락 양식 4건과 굴 1건, 개인어업권은 연안꽃게 통발 3건, 낚시유어선 4건으로 바지락·굴 양식과 낙지잡이, 연안통발(꽃게)어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고 낚시 유어선을 운영하는 어업인도 있다.

마을 가구 수는 총 118호로 이 중 어가가 95호, 비어가가 23호이다. 어촌계원은 178명이며 남자가 87명, 여자가 91명이다. 마을 내 주요 조직은 어촌계 이외에 청년회(25명), 부녀회(54명), 노인회(70명) 등이 있다. 선감마을의 경우 일부 어업인을 제외하고는 어업소득의 비중이 낮고 농업소득의 비중이 높아서 농사 규모에 따라 소득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마을 공동 양식어업인 패류양식(굴, 바지락)의 경우, 고령화 등으로 공동작업은 하지 않고 어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업인 에게만 어장을 개방하여 현재 40가구가 참여하고 있다. 연평균 수입은 7백만원으로 낮은 편이다. 어선어업의 경우 3가구가 연평균 4천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에 비해 농업소득은 포도 농사가 대부분으로 연평균 3천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업외 소득으로는 5가구가 운영하는 민박과 4가구가 운영하는 유어선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반면 시화방조제 건설 이후 대부분은 수도권의 주요 관광지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마을 주변에 경기도 청소년수련원, 경기도립 직업훈련원, 경기도 영어마을 등이 건립되면서 마을로 찾아오는 관광객도 늘어났다. 또 어촌민속전시관, 누에섬 전망대가 건립된 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주민들은 관광 수입을 통해 소득 증대를 꾀할 방법을 찾다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유치하기로 했다.

어촌체험마을을 조성한 후 2005년 사업 첫째 해 4천여 명이 체험장을 이용했으나 2006년에는 9천명으로 늘어났고 2007년에는 상반기에만 1만 명을 넘어서는 등 대폭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체험마을 운영 소득 또한 2005년 3천만원 수준에서 2006년 6천만원으로 증가했고 2007년 상반기에 7천만원 등 급속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비참여 어촌계원들로부터 양식장에서 채취한 바지락 8톤을 구매하여 체험장 살포용으로 사용하는 등 어업소득 증대에도 직접적으로 지

원하고 있다.

운영위원들의 체험안내 활동에 대해, 개장 첫째인 2005년에는 활동비를 지급하지 못했지만 2006년부터는 소정의 일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의 이익금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액 재투자하기로 했다.

2) 성공요인

선감마을이 채택한 사업은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으로, 어업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의 어업외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인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감마을이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된 것은 2001년이고,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9억2천6백만원(국비 2억5천만원, 지방비 6억7천6백만원)을 투입하여 편익시설을 조성하였다. 2005년부터 체험관광객을 받아들이며 본격적인 어촌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운영지원사업으로 2006년부터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사업이, 2007년에는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의 어촌체험마을 전문가컨설팅 지원사업이 각각 진행되었다.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어촌계공동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참여조직은 청년회, 부녀회가 중심적 역할을 하고 노인회는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며, 어촌계장은 B씨가 맡고 있다.

선감마을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착수하면서 마을 청년들이 중심이 된 운영위원회를 결성했다. 운영위원회를 결성한 이유는 계원수가 많을 뿐 아니라 상당수가 고령으로 어촌계원 전원이 운영에 참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갯벌체험장까지 이동 거리가 멀어 트랙터로 이동해야 하므로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계원들이 참여해야 했다. 그래서 참가를 희망하는 청년회 회원 14명을 선발하여 운영위원회를 결성 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직을 어촌계장이 맡고, 감사 2명, 총무 1명을 두고 있다. 운영위원들은 어촌체험마을 운영수익금을 3년간 재투자하기로 하고 마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참여한다

는 데 뜻을 모았다. 부녀회에서 식사 제공을 담당하는 등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 체험마을의 예약업무 등 사무업무는 사무장을 두어 진행을 맡겼다. 조직 내 협력을 위해 부녀회, 어촌계원 등 조직 간 체육행사 및 친목간담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있고, 위원장과 사무장은 정부에서 진행하는 관광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전문성을 높이기도 하였다.

(1) 주요시설 조성

안내실, 화장실, 샤워실, 휴게실을 갖춘 종합안내소와 갯벌 체험장 진입로 3.2km, 파고라 2개, 원두막 3개 등 편익시설과 주차시설, 종합안내관 5개를 설치했다. 체험시설로는 기존 바지락 양식어장 일부를 갯벌 유어장으로 전환했다.

2005년에는 지방비 9천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주차장과 파고라를 시설하였으며 2007년에는 미니폴장 조성 및 간판 설치사업이 지방비로 지원되었다. 또 자율관리어업 장려금으로 갯벌 체험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갯벌트랙터 4대를 구입하여 체험마을 운영에 필요한 기초를 닦았다.

특히 2007년에는 2년 동안 수익금의 40%를 갖는 조건으로 민간자본 1억2천만 원을 유치하여 몽골텐트 9동을 설치하고 체험마을 주변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개장초기인 2005년까지는 갯벌 조개잡이, 포도따기, 바다낚시 정도가 주 프로그램이었으나 이후 학습, 체험, 놀이, 이벤트 등 주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학습 프로그램으로는 갯벌생태 관찰, 포도밭 견학, 바지락 가공공장 견학, 식물 화분 만들기가 있고,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조개잡이 체험, 갯벌트랙터 타기, 머드체험, 갯벌썰매 타기 등이 있다. 놀이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머드놀이터와 야외 수영장이 있으며, 그 외에도 후릿그물체험(그물로 물고기 잡기), 바다낚시, 갯벌체육행사 진행, 해병대 극기 훈련, 캠프파이어, 바비큐파티, 몽골텐트 숙박 등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운영은 예약 접수 진행을 원칙으로 하며 사무장이 전담한다. 마을 청년회 소속 운영위원 14명이 당번제로 나와서 갯벌트랙터 운영(이동수단), 체험객 관리, 체험

안내 등을 맡고 있다. 당번 순서는 체험객 수에 따라 전날 배정한다.

식사는 부녀회에서 전담하는데 주요 메뉴는 지역 특산물인 바지락을 재료로 한 바지락칼국수이며 조개 구이도 제공할 수 있다.

(3) 운영지원 유치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사업을 유치하여 2006년부터 여성사무장 1명을 채용하고 체험마을 사무 업무를 맡기고 있다. 사무장은 안내소에서 상근 근무를 하며 운영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체험마을 운영 관련 예약접수, 사무업무, 체험안내, 홈페이지 관리 등 체험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를 맡아본다.

2007년 6월부터는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으로 지역의 이벤트 전문가를 마을 컨설팅 전문가로 지정하여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마을 운영상 애로점 해소, 마을 발전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받고 있다.

(4) 마케팅 및 홍보

선감어촌체험마을은 목표 시장을 수도권 내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학원의 학생들로 설정하고, 어린이들이 놀기 좋은 안전한 갯벌장, 재미있는 갯벌장, 충분한 수산물을 낚 수 있는 갯벌 체험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안전한 갯벌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3톤의 모래를 직접 체험장에 깔아 어린이들이 쉽게 갯벌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로 체험장의 안전뿐 아니라 바지락 치패가 안착할 수 있는 좋은 서식조건을 만드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농촌공사에서 운영하는 농산어촌체험마을 보험을 가입하여 안정성 높은 체험마을임을 과시하고 있다.

재미있는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광활한 갯벌을 가로질러 체험장까지 갯벌 트랙터로 이동하는 생경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야외수영장, 갯벌머드 체험, 갯벌썰매, 갯벌운동회 등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일시에 많은 체험객이 바지락을 캐기 때문에 체험장에는 바지락 물량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에 참여하지 않는 어업인들이 어장에서 잡은 바지락을 구매하여 체험장에 살포함으로서 자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마을의 어업인들이 판로 걱정 없이 어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다양화는 고객 지향적 사고에서 출발했다. 물때가 맞지 않을 때는 육상에서 할 수 있는 농사체험이나 화분같이 체험 등을 마련하고 야외수영장, 머드 체험장, 바다낚시, 후리그물 체험, 해병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비하여 참가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어촌민속전시관, 경기도 영어마을, 누에섬 전망대, 바지락 가공공장 등 주변의 자원과 연계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했다.

체험프로그램은 가격이 낮은 편은 아니나 누구나 1~2kg을 썰 수 있도록 넉넉한 물량을 살포해 두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격에 대한 불만을 없앴다.

사무장의 상시 근무로 예약 상담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이나 학교 측의 문의에 즉각적인 응대가 이뤄지고 있으며 자체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있다. 홍보책자를 제작하여 학원, 학교 등에 송부하고 내방객들에게 나눠주며 홍보하고 있다. 또 경기도 교육청에 홍보공문을 발송하여 경기도 청소년수련원과 연계한 체험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체험객 명단을 확보하여 연말에 연하장을 발송하기도 한다.

또 해양관광 포털 “바다여행”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방송언론 등의 취재 협조 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

(5) 주요 성공요인

선감어촌체험마을의 성공요인은 젊은 층 및 마을리더의 적극적인 의지, 정부의 선택과 집중적 투자, 목표시장 선정과 차별화, 적극적인 홍보,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적절한 운영, 지리적 여건 등을 들 수가 있다.

먼저 청년회를 중심으로 젊은 층이 단기적 수익보다는 마을의 발전을 위해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운영위원회를 결성했고, 개장 후 3년간 수익의 대부분을 재투자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또한 부녀회의 식사 제공 등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집중적인 지원과 이를 유치하기 위한 마을 리더의 적극성도 높이 살만하다.

수도권 지역의 학생들을 목표시장으로 설정한 것이 매우 주효했으며 안전, 재

미, 물량을 보장하는 체험장을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 다른 지역 체험 마을과 차별화한 것도 높이 평가된다. 또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도 성공요인이다.

수도권과 2시간 내 거리의 주요 관광지인 대부도 내에 위치한 것과 인근에 영어마을, 청소년수련원, 안산 어촌민속전시관이 위치하고 있어 도움이 되었다.

3) 평가와 향후과제

마을주민들은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마을 분위기가 과거보다 활기차졌다는 것과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가장 큰 효과로 본다. 과거 어업 세력이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침체되었으나, 관광객이 찾아오고 젊은 이들이 사업 구상과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마을 전체에 활기가 넘치고 있다. 신구 세대 사이의 약간의 갈등도 자연스레 해소되었다.

아직까진 미진하긴 하지만 비 참여 계원이 양식장에서 캔 바지락을 구매하여 체험장 살포용으로 사용하고 포도밭에서 포도체험을 매개로 포도 직거래를 실시하는 등 마을 생산품의 새로운 판로를 찾아냄으로서 농어업의 직접소득 증대에도 일조를 하고 있다.

어촌관광이라는 새로운 소득원이 개발되었고 실제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큰 효과이다. 지역주민을 사무장으로 채용하고 운영위원, 부녀회원의 참가에 따른 일급 지급 등 마을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로 마을이 많이 알려진 것도 큰 효과로 볼 수 있다.

선감어촌체험마을의 현재 문제점과 애로 사항을 살펴보면 자원고갈 및 갯벌 훼손 우려, 급속한 성장에 따른 어촌 정취의 상실 우려, 프로그램 운영의 계절적 한계, 경쟁심화, 인프라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체험객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잡기 위주의 갯벌체험이 진행됨에 따라 갯벌 훼손과 자원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체험객 수의 적정선을 설정하고 기존의 잡기 프로그램을 생태 교육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여름에 집중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계절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쉬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을에서 생산되는 굴을 이용한 겨울철 김장 담그기 축제 등 다양한 비 계절성 이벤트를 개발해야 한다.

급속한 성장세는 우려할 만하다. 너무 빠른 발전과 놀이 위주의 진행은 자칫 어촌 고유의 멋과 여유로움의 전달이라는 체험마을 조성의 근본적인 취지를 놓쳐 버릴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인근 화성, 강화 등지와 대부도 내에서도 어촌체험 마을이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고 이미 조성된 마을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많은 인원이 체험장을 찾고 있으나 진입도로가 좁아 위험성이 있는 것도 아쉬움이다.

5. 저도자율관리공동체

1) 사업과 현황

저도는 경남 사천시 마도동에 위치해 있고 원래 연안어업이 발달한 어촌이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자원 남획과 어획강도의 증가 등으로 어획량이 급감하여, 소득이 저하되자 양식어업을 도입하여 바지락 협동양식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개인적 이익 추구 등 어업질서가 문란해져 소득이 격감하고 어촌계 구성원 간 불신의 벽이 높아져 사업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등 어촌계 자체가 존립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그러자 마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주민들 간의 신뢰와 단합이 우선이며 적극적인 어족자원 관리와 새로운 소득증대 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후 청년회를 중심으로 주민 설득 작업을 거쳐 2001년 7월 지역주민 전원이 참여하는 자율관리공동체를 구성하게 되었다.

자율관리공동체는 어장 관리와 함께 어장 감시 체제를 구축하여, 주력 사업인 바지락 양식사업의 안정화를 이루었다. 또 어족자원이 풍부하다고 알려지자 저도 섬마을에 지속적으로 찾아오던 낚시객들을 눈여겨본 어업인들은 이를 사업화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저도 어촌계는 섬이라는 폐쇄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어촌계원도 18가구·24명에 불과한 소규모 어촌계다.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바지락 양식 1건, 협동양식 2건, 마을어업 1건 등 4건의 어업권을 보유하여 연평균 600톤의 바지락을 생산하고 있다. 또 개인 어업권은 죽방염 2건, 낭장망 1건, 연안어업허가 29건이 있으며 어선은 29척을 보유하고 있다.

이 마을의 어가 소득은 섬의 특성상 농경지가 부족하고 종사하는 업종이 거의

비슷하여 공동어업의 비중이 크고 주민 간 소득차이가 별로 없다. 가구당 바지락 양식이 4천만원선, 개인어업이 2천여만원선의 소득을 올려 어업소득은 가구당 6천여만원의 수준으로 볼 수 있고, 어업의 소득은 자율관리공동체 사업인 민박 및 낚시터 운영으로 4백여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평균 가구당 총 소득은 6~7천만원선이였다.

자율관리공동체에는 어촌계원 및 비어촌계원을 포함, 지역주민 전원인 총 32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남녀 각각 16명씩이다. 공동체의 운영위원회는 직책에 따라 운영위원장(1), 부위원장(1), 총무(1), 감사(2), 고문(1), 위원(5)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 마을 주요 조직으로는 청년회와 부녀회가 있다.

사업시행 첫해에 3천여명의 관광객이 다녀갔고 2005년 이후에는 매년 6천명선을 유지하고 있다. 어촌관광 사업으로 2006년 기준 총 8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이중 민박 운영 수입이 5,500만원, 낚시터 운영 수입이 2,500만원 정도였다. 시설 유지보수비와 유류비, 전기세, 수도세 등 비용 1천여만원을 제하면 순수익은 7천여만원 이다.

바지락 양식사업은 연도별로 생산실적 차이는 있으나 평균 연 700여 톤을 생산하여 7억5천여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이중 그물 수리 및 구입비, 선박수리비, 유류비 등 제반비용 5천여만원을 제하면 7억원의 순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자율관리공동체를 구성하기 전의 생산량 300톤, 수익 3억 2천여만원이라는 실적에 비해 상당한 성장이다.

2) 성공요인

저도마을이 도입한 사업은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자율관리어업 사업이었다. 자율관리어업 사업은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 구축,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사회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어장관리, 자원관리, 경영개선, 질서 유지 등을 어업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하는 운동으로 2001년부터 시행되었다.

사업도입 초기는 마을 내 불신과 갈등이 팽배해 있던 시기라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마을주민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주효했다. 마을주민 32명 전원이 자율관리공동체에 참여 하도록 유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립했으며 어촌계, 청년회,

부녀회의 적극적인 지원도 이끌어냈다. 운영위원회는 사업목표를 “지속가능한 양식어업기반 마련과 어촌관광(낚시/민박)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개발”이라고 설정했다.

우선 마을 주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바지락 양식사업을 안정화시켰다. 어촌계가 중심이 되어 바지락 채취기간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으로 설정하고, 공동체 소유 관리선(작업선 2척, 관리선 1척)을 도입하여 채취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체 회원 전원이 참가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모패 관리를 위한 보호수면을 설정하고 어장 감시초소를 설치하여 2인 1조 당번제로 운영하였다. 어장 청소 및 해적생물 구제는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어장에 종패를 살포하여 자원을 조성하는 사업도 꾸준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낚시터 조성과 민박 운영을 통한 어업의 소득 증대 사업으로 새로운 수익 모델을 구축하는데 주력하였다. 모든 주민에게 역할이 주어졌는데 부녀회는 민박관리를 맡고, 낚시터 운영과 마을까지의 도선 운행은 남자회원들이 전담하기로 하였다. 위원장과 어촌계장을 제외한 남자회원 14명은 2인 1개조로 7개조를 편성하여 1개조 1일 근무를 하였는데 주요 업무는 낚시터 관리 및 관리선으로 운영하는 도선 업무이다. 낚시관련 주요시설로는 안전하게 낚시가 가능한 낚시잔교 1식과 대방수로 중간에 바지를 띄워두는 낚시바지선 3식이 있다.

민박 운영을 전담하는 부녀회는 4인 1조로 4개조를 편성하여 조별로 1일씩 근무한다. 주요업무는 민박 예약 접수, 관리 및 청소, 이불빨래, 정리 등이다. 민박지는 폐교를 인수하여 민박동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낚시객들에게 인기가 있다. 2005년에 민박동을 하나 더 신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저도자율공동체의 낚시사업은 목표시장을 전문 낚시객 및 가족 낚시객으로 잡았다. 그에 따라 전문 낚시객을 위해 자원관리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어린이를 데리고 나들이 오는 가족 낚시객을 위해서는 낚시잔교와 청결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저도자율공동체의 전략을 살펴보면, 먼저 삼천포-남해 창선 연륙교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과 대방수로의 운치 있는 바다풍경 등 자연자원을 좋은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바다낚시터의 조성에 만전을 기했다.

낚시터가 삼천포 대방수로로 조류 소통이 양호하고 영양염류가 풍부하여 어족

자원이 많지만 마을에서는 투석을 통해 산란장을 조성하여 낚시객이 내방했을 때 조과가 어느 정도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 갯바위 낚시, 방파제 낚시, 바지선 낚시, 잔교 낚시 등 한 마을에서 다양한 낚시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을 주민들은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선은 낚시객들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운행하고 있으며 야간에도 섬으로 들어오겠다는 낚시객이 있으면 즉시 도선을 해주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갯바위, 잔교, 바지선을 이동하며 낚시를 즐길 수 있도록 선박으로 이동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숙박시설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마을 해안가도 월 1회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어촌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홍보는 입소문에 의존하고 있으나 재방문율이 50%가 넘는 것으로 보아 상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자체 홈페이지는 없으나 해양관광 포털 “바다여행”, 사천시 홈페이지, 해양수산부(현 농림수산식품부) 바다로 21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사천수산사무소와 사천시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고 있다.

(1) 마을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마을주민들의 단합 및 의지가 중요한 성공요소였다. 주민 모두가 만장일치로 사업에 참여했으며, 마을에서 사업비 1억4천6백만 원을 직접 투자하기도 하였다. 또 마을주민 전체가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마을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선 것도 중요하다.

전체 참여 인원 32명 중 50대 이하가 29명이나 되는 등 비교적 젊은층이 많아 외부 변화에 적극 대처 및 수용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것도 성공요인으로 뽑을 수 있다.

(2) 선점적 시장개발 및 차별화

바다낚시를 마을의 공동사업으로 채택하여 어촌마을 중에서는 선점하였다는 것과 바다낚시 마을로 특화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 것도 의의가 있다.

(3) 우수한 자연조건과 정부의 효과적인 지원

우수한 바다낚시터인 자연조건을 활용한 것이 성공에 큰 도움이 되었으며 정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단기간 내 낚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효과적인 지원을 해주었다. 수산사무소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도 큰 힘이 되었다.

3) 평가와 향후과제

마을주민들 간의 신뢰 회복과 결속력 강화를 가장 큰 효과로 볼 수 있으며 마을 자원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 생성도 효과였다. 마을에서 외부로 이주한 주민이 한 명도 없으며 오히려 마을로 들어오려는 외부인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이 그 증거이다. 향후 유료낚시터 확충, 해수풀장과 수산물 판매장 조성, 관광 유람선 운영 등 주민들 사이에서 활발한 사업 구상이 이뤄지고 있어 마을 활력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소득의 안정화 및 다양화도 큰 효과이다. 양식장 관리 운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조성,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이루었고 어촌관광이라는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여 성어기 이외에도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저도 자율관리공동체가 운영하는 낚시/민박사업의 문제점과 애로사항도 있다. 저조한 수익률과 단순한 프로그램, 연계자원의 활용도가 미진한 것과 홍보능력의 부족, 고객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등에 더하여 점차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전문 인력의 부족에도 대책이 필요하다.

낚시 체험비가 1인당 1만원, 숙박 시 5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러한 저가정책으로 인해 투입인력 대비 수익률이 저조하며, 관광객이 연평균 6,000명 선에서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이 관광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만큼, 자원의 연계활용이 미진하여 수익률이 떨어지고 효과적인 홍보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식당 운영 및 죽방멸치, 바지락 등 지역특산품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등 사업을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섬으로 들어온 관광객이 최대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섬의 특성상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지 않아 적극적인 홍보가 불가능한 것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전략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큰 약점이다. 또한 지금까지 찾아왔던 고객들에 대하여 관계관리(CRM)가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최근 사천, 통영 등 인근 지역에서 낚시마을과 어촌체험마을이 조성되고 있어 경쟁이 심화될 것이 우려되는 가운데, 어촌체험마을의 사무장처럼 체계적인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이 없다는 것과 전문가의 컨설팅 경험이 없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가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지원만 이뤄지고 이차적인 운영지원은 부족하다.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체계적인 홍보,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송계어촌계

1) 사업과 현황

송계마을은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위치해 있다. 대부분의 성공사례 이면에는 헌신적으로 밀거름이 된 인간상록수가 있듯이 송계마을에도 일에 흠뻑 빠져 살아온 인간상록수 C씨(52세)가 있다. 20여년간 마을의 어촌계장을 맡아온 그는 남보다 일찍 어촌관광사업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우선 중장년층 어촌계원들의 뜻을 모아 주변에 산재한 천혜의 자원들을 관광자원화하기 시작했다.

어촌의 수산업구조가 과거의 노동집약적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자본과 기술집약적 첨단산업으로 발전해가기 때문에 노동 의존도가 높은 갯벌어장의 천혜의 수산자원들을 방치할 수 밖에 없게 된 어촌의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어촌계장은, 노령화된 마을주민들이 소득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로서 갯벌어장의 무궁무진한 수산자원을 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어촌노인들의 풍부한 경험과 재담을 자원으로 활용하고, 노동 강도가 높은 체험행사는 젊은 세대가 담당한다면 마을에 일거리가 늘어나 활력 넘치는 마을이 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2002년 C어촌계장은 165㎡ 작은 비닐하우스를 바닷가에 짓고 이곳을 간이샤워장과 탈의장으로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인식한 무안군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2004년부터 어촌체험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사업 지원을 받아 명실 공히 어촌체험마을로서 면모를 갖추었으며, 이제는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일시에 과다한 관광객의 방문을 제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패쇄적이던 마을문화에 새로운 개방적 변화를 가져오기까지는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다. 노령층은 외부에 대한 배타성이 심했고, 전통적으로 자원이 풍부

하여 경제적 궁핍이 주변의 타 지역에 비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지인을 마을 내부까지 끌어들이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컸다. 특히 천혜의 방풍림인 해송림이 자연 상태로 방치되던 것을 내외부 사람들을 위해 활동공간으로 소규모 개발하는 문제로 반발감이 증폭되면서 세대 간 갈등으로까지 전개되었으나 중장년층의 지속적인 설득에 결국 마을의 미래를 책임질 중장년층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모두가 합의하였고, 관광객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및 부대공사를 수행하여 지금은 더욱 쾌적한 생활과 활동의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113가구·257명의 마을주민 가운데 어촌계원은 99명이고, 이들 가운데 60여명이 50대 이하의 청장년층으로서 일반 어촌에 비해 젊은 세대가 많은 편이다. 어촌체험마을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은 69명으로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74척의 소형어선을 이용하여 연간 2,500톤 규모의 각종 수산물을 채취, 생산하여 총 37억5천만원의 어획고를 올리고 있는데, 주요 수산업은 대표적 지역 특산물인 김 양식과 바지락, 소라, 고둥, 낙지, 게 등 갯벌어업 그리고 어선어업 등 다양한 어업생산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지역특산물인 김은 146ha의 광활한 갯벌 위에서 전통적 김 양식기술인 지주식 양식법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최고 품질의 서해바다 김으로 소비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송계마을은 논과 밭 경지면적이 많은 전형적 농어촌의 복합적 특성을 갖고 있다. 양파와 마늘, 간척지 쌀이 주생산 품목이고 연간 3억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데, 일부는 관광객들에게 지역특산물로 판매되어 연간 3천여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다.

체험마을 사업을 통해 직간접적 소득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는데, 특히 노령층의 참여는 마을을 활력 넘치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2006년도 체험마을 참여 관광객 수는 3,506명으로 방문객의 67%가 체험에 참여하였고, 체험소득으로 9천7백여만원과 민박, 식당 및 기타 판매소득으로 2억9천여만원의 소득을 얻었으며, 체험마을 운영에 따른 고용효과로서 연인원 825명의 고용과 6천8백여만원의 고용소득을 얻었다. 송계마을의 총 소득은 71억원, 가구 당 평균 소득은 6천3백여만원이다.

2) 성공요인

송계어촌계의 C어촌계장 및 젊은 층 계원들의 자조, 자립적 자세가 결국 마을의 전통적 부존자원을 마을을 살리는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킨 계기이자 전략이 되었다.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이 선택과 집중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무안군도 송계마을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고, 그 믿음과 선택이 성공적 결실로 점차 다가서고 있다. 결국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하려는 의지와 이러한 여건을 결집시켜 대내외적으로 합의를 얻어내는 노력과 열정 없이는 사업의 도입은 물론 사업의 성공도 불투명하다는 것을 송계어촌계의 사례는 잘 보여주고 있다.

어촌계 주관의 사업이 비 어촌계원에게도 최소한의 공유부분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반발을 예상하고 비어촌계 마을 주민을 체험프로그램 및 수익발생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배려함으로서 각종 기반 사업 조성을 위한 주민합의 과정에서 갈등이 아닌 협력적 관계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상생전략과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체험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촌계 자조금으로 농산어촌체험관광보험에 가입한 것은 체험마을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일조하는 현명한 선택이다. 또한 더욱 질 높은 어촌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받고 마을 리더 및 주민들의 농촌체험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어촌관광 리더가이드교육, 농산어촌체험마을 지도자과정, 농촌관광 지도자교육 등)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2004년 이전에는 소규모 관광객들이 부정기적으로 방문했었으나 체험마을 사업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용객의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 관광객의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체험프로그램의 간접적 영향에 의한 증가로 분석된다. 체험프로그램 이용자들로부터 얻는 직간접적 소득의 내용도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고, 일회성 방문이 아니라 재방문을 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은 송계마을 체험프로그램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해주는 근거가 된다.

송계어촌체험마을의 체험자원은 전통적 갯벌과 어장에서의 채취 및 어획체험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생태적 부존자원들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 쉽게 자원이 황폐하고 고갈될 위험이 있다. 갯벌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일시에 대량의 체험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1일 100명 이하의 규모로 조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의 환경에서는 100%의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단순히 체험자를 모집하기 위한 홍보와 마케팅보다는 장기적으로 고비용 고품질 체험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송계마을은 농어촌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마을이다. 따라서 관광안내소 주변지역에 양호한 농촌관광 자원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러한 자원을 어촌체험 프로그램에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윈드서핑 장소로 유명한 홀통유원지와 조금나루유원지 등 주변에 위치한 해양관광 거점들과도 별도의 연계프로그램의 콘텐츠를 다양화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추어져 있다.

결과적으로 송계마을의 어촌체험마을사업이 짧은 사업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용한계점에 도달할 만큼 성공한 데는 천혜의 풍부한 갯벌생태자원과 이들 자원의 탁월한 생태회복력이 주효했다. 광활한 갯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어촌계원들이 헌신적으로 봉사와 노력을 기울인 점도 놓칠 수 없다. 체험자들을 10명 단위로 분리하여 여러 곳으로 분산시킴으로서 특정지역의 생태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배려하고, 이로 인해 갯벌생태가 빠른 속도로 복원되어 지속적으로 체험어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어촌계의 지혜는 생태 자원형 체험마을 운영사례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3) 평가와 향후과제

갯벌의 생태자원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유지되기 어려운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체험자원의 관리가 가장 큰 애로사항인 동시에, 역으로 성공할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 따라서 어촌체험마을사업은 결국 이러한 능력을 갖춘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송계마을은 먼저 천혜의 지속가능한 갯벌생태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적인 성공요인이다. 삼면이 바다이고 배후에 함평만의 큰 내만과 서해로 연결되는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어서 다양한 해양생태자원이 이동하는 길목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천혜의 여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방문객들에게 오감을 만

족시킬 만한 성취감을 줄 수 있으므로 특별한 홍보 전략이 없어도 입소문으로 홍보가 활성화되어 재방문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적 역량과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좋은 먹거리와 편한 잠자리 문제만 해결되면 체류형 고급 체험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다. 송계마을의 경우도 기존의 어촌주택으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없으므로 펜션형 어가주택으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며, 이러한 경우 보다 더 좋은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인허가상의 제한사항이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와 규제완화 조치를 자치단체가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송계마을은 체험마을사업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방문객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결과로 인해 2006년 한 해 동안 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고용이 825명 있었으며, 체험마을사업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이 마을 전체 소득의 15% 수준으로 발생하였다. 지역내에 산재한 농업적 자원과 문화적 자원들이 현재로서는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자원들이 적극 활용되고 어촌체험프로그램도 콘텐츠를 다양화해 나간다면 고용효과 및 소득증대에 직간접적으로 큰 효과를 거둘 것이다.

양적 체험보다는 질적 체험프로그램과 사업으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체험객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숙박시설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한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기존의 주택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고급 펜션스타일의 숙박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주택을 고급형 펜션으로 리모델링하거나 해안경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위치에 신규로 건축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관광 농업적 요소의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하다. 마을 및 해안 주변에 우수한 농경지들이 존재한다. 갯벌체험은 조석 시간대에 맞추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갯벌체험 시간 전후로 농업적 요소와 자원을 관광 자원화하여 사양화된 지역농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든다면 어촌관광 중심의 마을로 완전 전환해 나아갈 수 있다.

예를 들면 관광안내소 주변의 넓은 밭에서 풋옥수수를 직접 수확해서 찌먹고 구워먹기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 수도 있고, 수박, 참외 등의 농장을 조성하고 원두막을 지어 현지에서 직접 판매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보완적 기능의 농업적 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체험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뿐만 아니라 마을 소득증대와 직결되므로 도입이 절실하다.

제2절 국외사례

1. 일본

1) 고치현(高知縣) 무로토시(室戶市)¹²⁾

(1) 지역의 개요

무로토시는 총 248km² 면적 중 87%가 산림이며, 인구는 약 2만2천명으로 대부분 어업에 종사한다. 동부 태평양으로 돌출한 무로토시는 일본 최대의 참치 원양어업 기지로서 바다와 함께 발전하여 왔지만, 참치원양어업이 쇠퇴함에 따라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 원양어업의 쇠퇴와 높은 당일형 관광객의 비중

무로토시는 우리나라의 어촌현상과 유사하게 인구가 연간 500명 정도 감소함과 동시에 지역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과 수산자원의 감소에 따라 기간산업인 어업이 쇠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시급한 것도 우리나라 어촌이 안고 있는 당면과제와 비슷하다.

무로토시는 천혜의 자원인 무로토 곶이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해양형 레저기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아카시해협대교(明石海峽大橋)의 개통과 함께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그러나 90% 이상의 관광객이 당일형 이어서 체재형 관광객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체재형 관광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과제였다.

(3) 해양형 체험을 풍부하게 도입한 블루 투어리즘 계획

무로토시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로토시 블루 투어리즘(Blue Tourism)¹³⁾ 모델 정비계획위원회를 조직하여 블루 투어리즘 계획을 수립하였다. 즉, 무로토시는 어업과 함께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해양형 체험관광을 도입한 프

12) 이승우. 2003.9. “어촌의 비전은 없는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월간 해양수산. pp. 61~63.

13) 일본에서는 도시 주민들이 농·산·어촌의 풍요로운 자연에서 일상생활의 체험, 지역 주민들과의 교류 등을 즐기는 여가활동을 그린 투어리즘(Green Tourism)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특히 섬이나 바닷가에 위치한 어촌과 해변에서의 생활체험을 통하여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는 여가활동의 충칭을 블루 투어리즘이라고 한다. 박광범. 2005.6. “어촌관광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정책연구원. p. 43.

로그래를 만듦과 동시에 그것이 체재와 숙박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해양형 블루 투어리즘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로 하였다. 고래와 거북이 등 중요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고래관찰 등 교육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무로토시의 블루 투어리즘의 심벌로 구축하였다.

(4) 무한의 가능성을 가진 해양 심층수의 이용

무로토시는 블루 투어리즘의 활성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해양 심층수”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무로토시의 동쪽 해안은 연안부가 매우 깊어 심층수의 취수가 용이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최초로 1989년에 해양 심층수 연구소를 개설하여 심층수의 다양한 이용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심층수를 전복, 넙치와 다시마 등의 양식장에 이용할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의 원료로도 사용하고 있다. 특히 심층수가 아토피성 피부염의 치료에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심층수를 이용한 종합적인 탈라소 세라피(Talaso Therapy)를 통해 지역주민과 도시 주민의 교류거점을 만들어 블루 투어리즘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5) 환경·경관 마을 만들기 활동

V자형으로 태평양을 향해 돌출하여 있는 계곡에 “코”라고 불리어지는 곳은 파도가 심한 바다와 기암이 즐비하기 때문에 신일본 팔경 중의 하나이다. 또한 자연 친화적인 인공 건축물도 무로토시의 우수한 경관을 형성하는 요소이다. 오래된 등대와 전망대로부터 최근에 건설된 풍력발전시설과 태양광발전시설까지 모두가 우수한 관광자원이다. 이와 같이 무로토시는 자연경관과 인공 건축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블루 투어리즘을 촉진시키고 있다.

(6) 숙박체험 교류시설과 프로그램

외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인 “국립 소년자원의 집”은 수용인원이 408명이며, 단체숙박뿐만 아니라 가족단위의 숙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아울러 단순한 숙박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잔디스키, 트래킹, 체험농업, 찻잎 따기, 떡치기, 화석관찰, 바다낚시, 지인망, 해변놀이, 미니 크루징, 별 관찰, 밤길체험, 캠핑, 도르래 만들기, 죽마 만들기, 벗

나무 공작, 숯 공작, 짚 세공, 토기 만들기가 있다. 앞에 나열된 프로그램으로부터 무로토시가 산림과 바다를 동시에 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계절별로 체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족 중심의 체험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인기를 끄는 것은 1996년부터 시작한 대부망(大敷網)체험이며, 무로토시의 해양형 체험 프로그램 중 고래관찰이 프로그램의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무로토시의 해양 체험형 교류 사업 중 “옛날 고래 이야기”라는 주제로 무로토시 우호교류협회가 주체가 되어 도시주민을 대상으로 향토사가에 의한 고래에 얽힌 이야기, 무로토 곳 주변산책, 대부망 견학과 포경선의 레이스 견학 등 주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무로토시는 산림과 바다로부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특히 바다자원을 이용한 프로그램이 도시주민에게 매우 인기가 있다.

(7) 무로토시의 블루 투어리즘 활동 이념

블루 투어리즘 모델 정비계획위원회는 젊은이를 중심으로 20대부터 40대 후반까지의 농어업생산자, 어협직원, 상점주 및 민박경영자 등 각 계층이 포함된 남녀 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위원회의 블루 투어리즘 활동이념은 첫째, 항상 무로토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 만족도를 확인하면서 개선·발전을 도모한다. 둘째, 소프트 관광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한다. 셋째, 블루 투어리즘의 실천이 농림수산업의 진흥과 궤도를 같이 하면서 수행되도록 한다. 넷째,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개선하는 종래의 활동과 블루 투어리즘의 실천을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한다. 다섯째, 블루 투어리즘을 담당하는 젊은이, 부인과 고령자 등이 기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적 추진체계를 만든다. 이상의 활동 이념으로부터 무로토시는 블루 투어리즘이 관광활동을 촉진시키면서 1차 산업의 진흥 수단으로 활용되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나가사키현 어촌관광¹⁴⁾

나가사키현은 일본 국토의 최서단 큐슈의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는데 동서

14) 상계서. pp. 50~53.

213km, 남북 307km에 이르는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큐슈 서쪽을 북상하는 쓰시마 난류, 제주도 서남쪽에서 흘러오는 황해 냉수와 큐슈 서연안수 등이 유입되어 수계를 이루고 광활한 대륙붕에 형성된 복잡한 해저지형을 따라 풍부한 어장이 형성되어 있다. 내만에서 근해에 이르기까지 다종 다양한 어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2년 현재 어업생산량은 30만2천톤으로 전국 생산량 577만톤의 5.2%, 생산액은 1,120억엔으로 전국 생산액 1조6,114억엔의 6.9%를 점하여, 현(縣)의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발간한 농림수산통계 및 어촌동태연보에 의하면, 나가사키현의 어업 취업자 수는 1990년에 3만2천여 명이었으나, 2001년에는 2만4천여 명으로 1990년대에 비하여 8천여 명, 약 25%가 감소하였다. 특히, 젊은층의 감소가 뚜렷하여 남자 취업자를 보면 40세 미만이 40%가 넘는 감소율을 보였으며, 65세 이상은 54%가 증가하는 등 어업취업자의 고령화 및 후계자 부족문제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

(1) 카츠모토초(勝本町)의 하룻밤 건어물 만들기 체험

이키섬 북쪽에 위치한 카츠모토초에서는 지선어장에서 잡은 오징어를 이용하여 건어물을 만드는 “하룻밤 건어물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 자신이 만든 건어물은 택배로 집에서 다시 받아 볼 수 있으며, 5명이상 예약제로 운영된다.

(2) 사이카이초(西海町) 바다의 역 “후나반쇼(船番所)”

사이카이초의 요코제포(横瀬浦) 히라도(平戸)에 이어 포르투갈배가 내향한 항구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에 지어진 “바다의 역 후나반쇼”는 1714년 밀무역의 검사소로 지어진 후나반쇼를 재현한 것이다. 당시의 건물 일부를 사용한 풍치있는 모습과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바다 풍경은 찾아오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후나반쇼는 관광지로서 어묵 만들기 체험, 바다의 역 후나반쇼 주취 낚시대회 등 계절별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3) 마키지마(牧島) 페이론 체험 학습

나가사키에서 에도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페이론 선”을 승선할 수 있는 프로

그램이다. 바다 위에서 28명이 한배에 승선하여 함께 배를 움직이기 때문에 연대의식을 기를 수 있고 지역주민과 대화의 시간도 가질 수 있다. 1척당 28인승으로 5척까지 동시 승선이 가능하며 약 300m 거리를 왕복한다.

(4) 쓰시마(對馬) 다카하마(高兵)에서의 다이빙

쓰시마의 다카하마 어협 관내에는 다이빙에 적합한 장소가 많아 예전부터 어협과 어업인들이 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2003년부터 다이빙 전문숍과 손잡고 다이빙의 도입과 안전대책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2003년 8월 30일부터 보트 다이빙과 비치 다이빙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초보자와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여러 곳의 다이빙 포인트가 있으며, 다이빙과 함께 여기저기에서 출몰하는 다양한 고기떼와 아름다운 산호초 등 다이내믹한 쓰시마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다.

(5) 고토 바다에서 놀자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둘러싸인 고토열도 나카또지마(中通島) 북동부에 있는 아리카와쵸(有川町)는 투명한 바다와 모래사장, 푸른바다가 아름다운 곳이다. 에도시대부터 포경업을 중심으로 수산업이 발달하였고 지금도 정치망 어업을 중심으로 한 수산마을이며, 이 마을에는 “감청색 하늘과 푸른 바다, 그리고 흰 모래사장”이라는 수식어가 잘 어울리는 해수욕장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열려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가고 있다. 해수욕장 개장일은 7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이 시기에는 “해수욕장에서 즐기는 날”을 정하여 저인망 체험, 해상 선인망 대회, 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고토바다에서의 “여름 추억 만들기 가족여행”도 기획하여 해수욕은 물론 수산가공, 지역견학 등의 체험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내만에서는 정치망어업 어장을 견학할 수 있는데, 동이틀 무렵부터 시작되는 정치망의 양망 작업은 조용한 바다 위에서 울려 퍼지는 어부의 목소리와 그물 안으로 보이는 물고기의 모습이 보는 이를 압도하기에 충분하다.

(6) 쓰시마의 다랑어 양식 체험관광

풍요로운 바다환경을 가진 쓰시마에서는 신선하고 안전하며 좋은 맛을 자랑하는 “참치회의 꽃”(나가사키 쓰시마의 양식참치 브랜드) 다랑어가 양식되고 있다. 쓰시마에서는 다랑어 양식장을 견학하는 체험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만한 큰 다랑어가 힘차게 수영하며 먹이를 받아먹는 모습 등 약동하는 다랑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7) 이키섬의 “갯바위 놀이 in 카츠모토”

이키섬 북부에 위치한 이키시 카츠모토초에서는 어협이 어장을 개방하여 성게, 소라 등을 잡을 수 있는 “갯바위 놀이 in 카츠모토”가 열리고 있으며, 성게나 소라는 해저에 숨어 있지만 이것을 상자안경이라 불리는 도구를 쓰고 잡는데, 잡는 것만으로도 즐겁지만 그 자리에서 바비큐로 요리하여 먹을 수 있다. 매년 천명이 넘는 관광객이 이곳을 찾고 있으며 한번 이곳을 다녀간 사람이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2000년 개장한 “갯바위 놀이 in 카츠모토”는 2004년 개방 어장을 2곳으로 늘리고 5월부터 9월에는 매일 체험할 수 있으며, 체취시간은 2시간이다.

3) 후쿠오카현(福岡縣)¹⁵⁾

후쿠오카현의 어업은 해면어업과 내수면어업으로 구분되며, 해면어업은 원양·근해어업과 치쿠젠(筑前)해, 아리아케(有明)해, 부젠(豊前)해의 해구에서의 연안어업으로 나눌 수 있다. 연안어업의 경우, 외해성인 치쿠젠 해에서는 어류를 중심으로 하는 어선어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만성인 아리아케 해에서는 김양식업과 패류 채취업, 내해성인 부젠 해에서는 새우, 게류 및 패류를 대상으로 하는 어선어업 및 굴 양식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내수면 어업은 치쿠고(筑後)강의 잉어, 재첩, 우시베가와(失部川)의 피라미, 은어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하천어업과 잉어, 장어 등의 양식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1) 후쿠오카시 해상 낚시 공원

1985년 후쿠오카현은 7억엔을 투자하여 잔교시설을 갖춘 낚시터를 건립하였으

15) 상계서. pp. 53~55.

며, 이후 인공어초 시설 및 인공 백사장, 방사장 조성을 통하여 해상 낚시공원을 조성하게 되었다.

후쿠오카현의 겐카이나다 서쪽에 위치한 바다 낚시공원은 해상에 386m의 T자형 강철재가 육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전망대,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등이 있는 3층 규모의 관리동, 도로변에 자동차 2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그리고 농수산물 직매장(비상설)이 있으며, 버스 정류장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3월~10월까지는 06:00~20:00까지, 11월~2월은 07:00~17:00까지이며 연 이용객 수는 약 55,000명에 달한다. 이용요금은 대인용 기준으로 4시간 이내로 1인당 1,000엔이다. 시설관리를 위해서 후쿠오카시에서 80% 그리고 어협에서 20%를 출자하여 2천만엔 규모의 후쿠오카시 해상낚시공원 관리협회를 설립하였으며, 평균 약 5천만엔 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적자비용은 후쿠오카시에서 보전하여 주고 있다.

공원 관리협회는 현재 55,000명 규모의 이용객 수를 인근 펭귄 수족관 관광과 연계하여 2008년까지 매년 5%씩 증대시켜 70,000명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치어방류, 주변어장에 대한 조업규제, 연 20회 규모의 낚시대회(직장, 가족대회 등) 등의 이벤트 및 초보자를 위한 낚시지도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해상낚시 공원이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후쿠오카시는 낚시공원을 통하여 수익사업 개념이 아닌 수산업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휴식공간 제공과 학생들의 교육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2) 마린월드(Marine World)

1989년 4월에 국영 우미노나카미찌 해변공원의 문화리조트 지역에 개관한 수족관이며, 홋카이도 주변의 아한대성 350종류 2만종에 이르는 다양한 바다생물을 영상, 음향기기, 수중카메라 등의 전시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주요시설은 ① 수량 2,000톤 규모의 돌고래, 물개쇼 수영장 ② 수심 7m, 수량 1,400톤의 파노라마 수조(20종 20마리 상어 전시) ③ 직경 13m, 수심 15m, 수량 720톤의 옥외 고래 수영장 ④ 터널수조, 원형수조, 바다거북, 심해수조 등 70여개의 전시수조가 있다. 또한, 주요 볼거리로는 아름다운 하카타만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돌고래와 물

개쇼, 상어가 헤엄치는 파노라마 대수조 에서의 다이버가 펼치는 아쿠아 라이브 쇼, 물속생물을 이용한 재미있는 실험이 펼쳐지는 마린 과학 연구실, 만지며 조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경기 코너 등이 있다.

2. 캐나다 뉴펀들랜드 Change Islands 어촌관광¹⁶⁾

Change Islands는 뉴펀들랜드 동북부 해안의 뉴월드 섬과 포고 섬 사이에 고립되어 위치한 섬들 가운데 하나이다. 섬의 주민들은 경제를 다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으나, 섬의 위치와 낙후된 개발수준으로 섬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관광자원을 이용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어쩔수 없이 주민들은 섬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과 잘 하고 있는 것에 눈을 돌렸다. 주민들은 니트제품, 수공예품과 같은 일부 제품에 대한 표준을 개발하고 인터넷과 같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여 판매하기로 결정하였다. 사업과정에서 주안점은 마을 사람들과 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가에 맞추어 졌다.

2001년 주민들은 중개상 없이 자신들이 만든 수공예품 위주의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이후, eBay에서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섬의 상점에 수공예품을 파는 도매 박람회도 참여하였다.

섬 주민들은 이러한 전자상거래와 도매를 통하여 지역경제에 자신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으며, 경제적인 혜택과 여객선을 포함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개선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섬을 찾는 관광객들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였다.

Change Islands 사례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어촌관광의 시작이란 정부 혹은 외부의 투자가 선행되는 것이 아닌 마을에서 고유하게 행하고 있는 것, 잘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세하고 알려지지 않은 마을을 외부세계로 이어줄 수 있는 모든 자원에 주목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3. 호주 Rottnest 섬 어촌관광¹⁷⁾

호주 남서부 Perth 앞 Rottnest 섬은 기본적으로 디젤 발전기에 의하여 전기를

16) 상계서. pp. 55~56.

17) 상계서. p. 56.

언지만 태양열, 풍력 발전기를 추가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풍경을 제공한다. 화장실도 퇴비화시설을 갖추어 가급적 오염물질 발생을 줄였으며, 하수정화 시설도 설치하였다. 특히, 방문자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준비하여 섬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노력에 대하여 설명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자제토록 요청한다. 섬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당국과 섬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결실을 맺어 섬에는 매년 400,000명 가까운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호주에서도 친환경적인 해양관광지로 손꼽히고 있다.

제3절 사례의 시사점

국내 어촌의 성공사례는 어촌지역의 자연경관 및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특성에 알맞은 사업을 추진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어촌지역의 공공자원을 적극 활용하면서 인근 대도시 소비지를 활용하여 집중적인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다.

대부분의 성공어촌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산물의 소비확대, 지역리더인 어촌계장의 헌신적인 노력, 어촌계원이나 마을주민의 결속력이 크게 돋보였음을 알 수 있으며 성공요인과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라자유통리공동체는 공공자금을 마련한 후 전복양식어장 정리사업 및 전복공동판매 방식을 채택하여 공동의 수익을 극대화시켰다. 반면, 온라인상에서 체계적인 홍보 및 판매 전략이 부족하여 향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물치어촌계는 직접 잡은 활어를 회센터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국가보조 사업을 통해 관광기반을 마련하여 어업의 소득을 창출하였다. 활어회 센터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등 시설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자어촌계는 활어직판장을 직접 운영하면서 철저한 고객 위주의 마케팅을 대전제로 하여 연간 4백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반면, 활어자원 감소에 따른 대책과 활어직판장 건물 현대화 대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감어촌체험마을은 목표시장에 맞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하여 어업의 소득을 높였다. 그러나 놀이 위주의 진행은 자칫 어촌 고유의 멋과 여유로움을 잃어버려 체험마을 조성의 근본 취지를 놓쳐버릴 수 있다.

저도자율관리공동체는 섬이라는 지역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문 낚시객 및 가족 낚시객을 목표시장으로 삼고, 바다낚시터 조성, 민박운영을 어업외 소득 증대 사업으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구축하였다. 앞으로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외부 전문가의 컨설팅과 홍보,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송계어촌계는 전통적 갯벌체험과 어장에서의 채취 및 어획체험 활동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질 높은 어촌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컨설팅을 받거나 마을 리더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관광 관련 교육프로그램에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갯벌체험은 조석시간대에 맞추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농업적 요소를 관광 자원화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외 어촌관광의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일본 고치현의 무로토시의 경우는 해양형 체험 프로그램 중 고래관찰이 얼굴 역할을 하고 있다. 무로토시는 블루 투어리즘이 관광활동을 촉진시키면서 1차 산업 육성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카사키현은 건어물 만들기 체험과 다이빙체험, 쓰시마의 다랑어양식 체험이 유명하다. 제주지역은 외해 수증가두리를 이용한 고등어, 돌돔 등 시험양식이 태풍 등에 시설물 안전성이 입증되어 다랑어도 시험양식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후쿠오카현은 1985년도에 7억엔을 투자하여 해상낚시공원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약 55,000명이 이용하고 있다. 후쿠오카시와 어협에서 공동 출자하여 해상낚시공원 관리협회를 설립하였으며, 매년 약 5천만엔 정도의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적자비용은 후쿠오카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다. 제주지역은 해양특성상 해양시설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대형 낚시공원 조성은 어렵지만 소규모형태의 해상 낚시터 조성사업 검토를 제안해 본다.

제5장 제주지역 어촌계 활성화 정책의 발전방안

1. 어촌 주민의 역량강화

1)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어촌주민의 자세전환

오늘날 친절과 서비스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이다. 서비스는 어디까지나 친절을 전제로 하여야 하나 때로는 지나친 친절을 최고의 서비스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엄격히 말해서 친절은 서비스가 아니고, 서비스 역시 친절이 아니다. 서비스는 제공자가 상대방에게 직업인의 자세로서 성실하고 세심하게, 완전하고 신속하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행동으로 표시하는 것이며 언어, 몸동작, 감정의 표현에 있어 거짓과 꾸밈이 없어야 한다. 지나친 친절, 지나친 서비스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오해를 받기 쉽다.

서비스의 전달자인 제공자와 봉사자는 정직하고 양심적인 마음을 행동을 통해 보여주고, 돕고 봉사해야 하며 이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친절이고 참다운 서비스 정신이다.

관광객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1차 서비스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마음, 자세, 소양, 양심 등 내면적 요건을 들 수 있으며, 2차 서비스로는 친절, 신뢰감, 안정감, 밝은 표정, 예의 등 외향적 요건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3차 서비스로서 타인에게 훈훈하고 친근감이 갈 수 있는 가족적 분위기가 보장되는 공간적 요인을 동시에 제공할 태세가 갖추어 질 때 비로소 타인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 상호 신뢰 속에 인정이 넘치는 친절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주 5일제 근무 등으로 경관 좋은 농어촌을 찾는 관광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을 때에는 이처럼 무형의 친절도 관광자산이라는 인식아래 상품화하여 그들을 어촌만이 갖는 인정 속에 따듯이 맞이함으로써 어촌관광객이 증가하는 물론 어촌관광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마을어장내 체험활동(바릿잡이)허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어촌계장은 마을어장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바릿잡이 허용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 어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을어장을 개방하는 어촌계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2) 어촌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

어촌 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의식과 관광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통해 어촌주민이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정책당국에 대해 갖는 막연한 기대 및 의존 심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주체적 참여에 의한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가져올 장기적인 편익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교육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어촌관광개발을 선도할 내부 지도자를 양성하고 어촌 주민이 스스로 사업주체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어촌관광에 대한 교육은 관광학과가 설치된 대학을 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실시하거나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설치되어 있는 연수조직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그렇지만 생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보상제와 같은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 볼만 하다.

지역 주민을 주체로 하는 어촌관광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교육이 어촌주변 어메니티¹⁸⁾ 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지역주민들 스스로 마을에 적합한 창의적인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올 수 있다. 어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소수 핵심적인 리더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어촌계 또는 마을의 자체교육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때 교육효과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3) 어촌주민의 참여확대 및 인식전환

설문조사 결과 어촌계 주도로 어촌관광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어촌계 자체자금의 부족과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따라서 어촌지역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어촌계의 자구노력 병행과 더불어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어촌관광이 성공적인 지역의 특징은 접근성, 경관, 경쟁력, 주민의 자발적 참여

18) 어떤 장소나 기후 등에서 느끼는 쾌적함을 일컫는 용어로서, 1990년대 중반부터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농촌 어메니티 운동 또는 농촌 어메니티 정책이 유행하면서 의미가 확대되었다. 자연 경관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농촌의 모든 경제적 자원이 농촌 어메니티이며, 어항을 중심으로 한 생산 기반시설 위주의 산업공간에서 벗어나 친환경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어촌을 만드는 것을 어촌 어메니티라고 한다. 또 쾌적한 도시환경을 도시 어메니티라고 하는데, 어메니티는 이처럼 어느 한 요소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http://www.naver.com>)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어촌지역의 지역주민 참여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어업인 스스로의 인식전환이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어촌사회 내에 어촌조직을 이끌어갈 지역 리더의 발굴과 육성이 요구된다.

어촌지역을 둘러싼 외부환경이 아무리 성숙되어 있더라도 실제 수용자인 어촌지역에서 이를 이끌어갈 능력이 없다면 주민참여에 의한 소득증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결집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리더가 어촌사회 내에 존재해야 할 것이다.

정부지원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어촌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촌관광개발을 위한 대상지역 선정 시 경쟁을 통하여 사업계획서를 직접 제출받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사업성공 시 각종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타 지역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어촌관광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관광객을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마인드는 내가 경영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자세를 갖지 못한다면 이 사업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부실한 사업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2. 어촌 물적 기반의 확충

1) 수산시설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방안

제주특별자치도내 어촌계에서 운영중인 소득사업은 민박시설, 수산물직판장, 활어횃집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수산시설을 이용한 어촌관광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수산시설은 훌륭한 관광자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 1972년도부터 매년 투자되고 있는 인공어초시설은 수산자원의 산란과 서식지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바다낚시 또는 스쿠버다이빙들의 체험장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생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양식어업 중 해상 가두리 양식장 일부를 어촌계나 영어조합법인이 유료 낚시터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어항시설에도 관광객 방문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방파제 등 어항시설은 친수공간¹⁹⁾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좋은 편이나 안전시설을 설치한 곳은 드문 실정이다. 수산시설의 기본적 기능에 관광기능을 첨가할 경우 수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어촌관광도 활성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산시설의 관광자원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인공어초시설을 이용하여 바다낚시터나 수중생태공원의 조성, 선상낚시터, 스킨스쿠버다이빙의 활동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둘째, 어항시설인 방파제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바다낚시터로 조성하거나 일부 어항구역에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함은 물론 외부관광객들에게도 새로운 산책코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해상 어류가두리 시설 중 일부를 이용하여 바다낚시터로 개발하는 방안이다. 가두리 양식장내 유료낚시터 운영은 어촌계나 영어조합법인은 가능하나 개인 소유의 가두리 양식장은 허용이 안 되고 있어 일부지역에서는 개인이 운영하는 가두리 양식장도 낚시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당국에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제주도 관내에는 28,000ha의 인공어초가 시설되어 있고, 어항은 99개항으로서 이중 국가어항 6개항, 지방어항 18개항, 어촌정주어항 75개항이 있다. 해상가두리는 9건에 19ha가 운영되고 있다.

2) 유어장 운영의 활성화

유어장²⁰⁾은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라 어촌계 또는 지구별 조합은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나 지구별 조합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정치성 구획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유어장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6조에 따라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

19) 친수공간이라는 말은 어원의 역사적·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수제선을 사이에 두고 육역과 수역을 포함한 장소를 의미한다. 즉 생산적인 행위와 전형적인 도시활동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고 또한 모든 사람이 이용가능한 공공공간으로 정의된다. 윤상호·김성귀·김종덕. 1998. “어촌 친수공간의 개발 필요성 제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참조.

20) 수산업법에서 정한 유어장이라 함은 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수산업법 제57조 제1항)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 및 수량,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유어”라 함은 낚시 및 작살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어장 안에서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와 수중호흡장비를 이용하여 잠수하거나 또는 수중호흡장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단, 물안경, 물갈퀴 이용은 가능함) 잠수하여 작살을 사용 자바리(다금바리), 붉바리, 능성어(구문쟁이)를 제외하고 1일 1인당 어류 2마리까지 포획할 수 있다.

제주도내에는 8개소의 유어장이 있으며, 2007년도 말 현재 3,595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어장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유어장 이용에 대한 이용자와의 요금징수에 대한 불필요한 마찰의 발생과 숙박, 어촌체험, 이벤트 등 육상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미흡,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유어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경영마인드 제고, 유어장 홈페이지 활성화, 어촌계 구성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유어장내 어류자원보호 방안 강구, 운영자 중심의 고급어종 방류 확대, 유어장 편의시설의 체계적 운영 관리와 육상 프로그램의 강화 등 전략이 필요하다.

3. 어촌계 관리운영의 강화

1) 어촌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최근 관광객의 관광 수요 패턴이 다양화 및 전문화 경향을 띠고 있으며, 대중관광보다 자연을 체험하고 학습하는 소규모 관광, 특히 가족관광이 증가하고 있다. 가족관광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 있는 가족이 중심이기 때문에 어업체험관광 상품은 가족관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어촌의 체험학습 활동은 도시민들이 휴양, 체험, 학습 등의 활동에 따라 복합적

으로 적용되며, 어촌 체험 활동을 바탕으로 생각할 때 마을의 어촌체험 학습 프로그램은 크게 휴양과 교류활동으로 구성되는 “민박 프로그램”과 학습과 체험활동으로 구성되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박은 어촌에서의 숙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어촌 민박은 어촌의 일반가정이 운영하며 체험, 휴양, 교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관광지 주변에 자연발생적으로 등장한 민박처럼 단순한 숙박 시설에 그치지 않고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특산물, 음식 등 상품을 개발하고 여기에 이벤트와 체험 프로그램을 덧붙여 도시와 어촌을 교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어촌관광은 관광객이 직접 어촌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 느끼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체험적 요소를 포함한다. 체험 프로그램 또한 민박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체험 그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민박, 해산물 판매, 식음, 어업체험, 휴양 등과 연계하여 효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어촌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바닷잡이 체험, 고망뎃시 체험, 정치망 그물 올리기 체험, 원담에서 고기잡기 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어업의 메뉴를 발굴하여 어업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어촌 체험장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체험객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농산어촌체험관광보험 등을 가입하여 걱정 없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2) 어촌관광 지역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용

어촌관광이 가능한 지역에 대한 정보는 어촌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어촌관광을 원하는 방문객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어촌관광이 체재형 관광과 체류형 관광의 특성을 가질 때 어촌에 대한 체험의 형태와 민박시설에 대한 정보제공의 유무 혹은 정확성의 정도 등은 어촌관광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해당 어촌의 정보를 관광객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관광 지역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관광객이 필요로 하는 어촌관광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원하는 어촌관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 어촌관광개발 사업이 어촌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지역특산품의 판매액 증가, 어촌체험관광 입장료 수입 및 식당 소득 증가 순으로 나타나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정보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이 시급하다.

3) 어촌관광의 경영마인드 도입 및 활용

어촌관광은 자연경관, 편의시설, 어촌전통문화와 어장체험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어촌주민과 도시민의 만남 또한 매우 중요하다. 어촌주민은 어촌관광에 있어서 생산자이며, 도시민은 소비자로서 직접적으로 만남으로서 관광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촌주민은 관광 상품의 소비자 지향을 통한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어촌관광마을의 성공을 위하여 지역 리더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처럼 경영마인드를 갖고 경영하여야 한다. 어촌관광의 경영요소로서 인사조직·관리 분야에서는 운영조직체 구성 및 운영, 종사자 교육훈련, 성과급 배분 등이 핵심요소이며, 어촌관광 투자계획과 어촌관광 경제성 분석 등이 재무관리 분야에서 주요한 분야이다.

그리고 마케팅 분야에서는 소비자 계층분석, 소비자 의식조사와 어촌관광 홍보 전략 등이 중요하며, 관광시설과 어촌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이 생산관리 분야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4) 어촌계운영 활성화 지원책 도입

어촌계는 수산행정 조직의 성격이 짙은 어촌사회로서, 어촌계장은 행정, 수협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어촌계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마을에 비하여 활동비 등 대우가 열악하여 사명감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어촌계장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명감 고취와 수산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어촌계 운영비(어촌계장 및 사무장 활동비 등)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4. 신 관광자원의 융합 및 개발 필요성

1) 영등굿 등 어촌문화의 관광자원화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한 관광개발은 지방적 특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진가성은 증진되며, 또 그것을 보유한 지역사회가 그 상품의 일부가 될 가능성은 높아진다.

영등신을 맞아들이고 영등신을 치송하는 영등환영제와 영등 송별제를 영등굿이라 한다. 생업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 의례가 치러지고 있는데, 생업영등신은 어부나 잠수들에게 해상안전과 생업의 풍요를 가져다주는 풍요신으로 음력 2월초 하룻날에 들어와 2월 15일에 우도를 통해서 나간다.

제의의 명칭은 영등굿, 영등제, 영등손맛이 등으로 불리며, 특히 제주시 건입동에 위치한 칠머리당 영등굿이 영등송별제이다. 칠머리당 영등굿은 1980년도 국가 지정 무형문화제 제71호로 지정되어 보존해오고 있다. 또한 성산읍 고성신양 어촌의 영등굿도 그 역사가 수십년을 이어오고 있고 매년 “광치기 해안”에서 마을주민과 잠수들이 모여 굿을 해오고 있다.

영등굿 이외에 전통 무속신앙으로서 잠수굿이 있다. 잠수굿은 잠수들의 안녕과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굿으로 동김녕리의 잠수굿이 유명하다. 잠수굿과 같은 무속제의로 해신제, 풍어굿 등의 명칭으로 가파리와 사계리, 온평리 등에서는 무속제의로 제를 지내고 있다. 어촌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발굴은 어촌관광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영등굿 등의 관광자원화 방안은 행사장소의 확보와 수석 심방에 대한 기능보유자 등록 지원, 행사비용의 지원을 충족시키면서 소규모 영등굿 전시관 건립, 지역축제와 연계한 굿의 재현 등 실행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어촌에 산재한 무형문화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어촌관광 소득화 할 경우 어촌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해녀축제의 차별화 및 활성화

그 지역을 외부로 알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특산물 생산과 홍보, 전례되는 향토축제와 문화 행사이다. 축제는 관광 매력을 증가시키고 관광객 재방문 유도과

관광목적지 창조 혹은 강화에 기여하며 도시의 경제적 성장 촉진제로서 역할을 하거나 지역사회의 고유한 문화를 표현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2007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716개의 지역축제가 개최되고 있고 제주도에는 26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축제의 소재는 예술문화 축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관광특산물축제, 전통 민속축제, 관광문화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제주도에서 매년 개최되는 축제 중 2007년 문화 관광축제 선정내역을 보면 최우수축제나 우수축제에는 선정되지 못했으나 유망축제에는 정월대보름들불축제와 서귀포 칠십리 축제가 선정되었고 예비축제에는 제주 왕벚꽃 축제가 신규로 선정이 되었다.

전국 연안 시군의 해양관광축제는 138개로서 이중 제주도에는 12개가 개최되고 있다. 지역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축제테마의 발굴과 계절성을 극복해야 하며, 지역축제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철저한 기획과 홍보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지역축제 중 제주도 차원에서 볼 때는 해녀축제가 상징성이 있고 매력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해녀축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해녀다. 해녀축제를 만드는 일은 해녀와 그들의 문화를 보존하는 일과 맞물려 진행되어야 한다. 해녀들이 많이 남아 있는 곳을 해녀와 바다를 매개로 주민 축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단체의 뛰어난 학문적 전문성과 기획력을 합치면 성공적인 축제가 될 것이다.

3) 어촌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정부와 지역주민의 공동투자,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종합개발, 어업체험 및 체험어장 개발,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어촌관광의 성공을 위해서는 타 지역과 차별되는 색다른 상품과 서비스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우리 어촌에서 도입 가능한 어촌관광 개발사례를 보면, 첫째, 해양낚시공원 조성을 들 수 있다. 제주도는 해양특성상 태풍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곳으로 해양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마을주변의 어촌문화와 경관을 활용하여 해양낚시공원 조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주요시설은 진입도로, 해안테크, 정자, 낚시교, 해상낚시터, 안내소 등이다. 단기간에 대규모 낚시공원 조성이 어려우면 우선 소규모사업으로 바지선 형태의 해상 낚시터라도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만 하다. 해양낚시터가 조성이 되면 지역주민 고용창출은 물론 어업인 소득증대로 이어져 어촌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래 관광을 들 수 있다. 고래 관광은 연간 10억달러에 이르는 산업이며 미국, 호주,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 전 세계 87개국에서 연간 9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선박과 육지에서 고래를 관광하고 있다. 고래 관광이 본격적으로 개발된다면 어촌의 색다른 관광자원으로 각광받을 것이다. 고래관광은 해당지역의 숙박과 기념품 코너 등 각종시설에 일반 어촌관광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고래관광 적합지는 우선 연중 돌고래가 목격되는 제주시 서부지역에서부터 동부지역, 그리고 성산포 지역 등이 꼽히고 있다. 우선 고래관광을 시작하기 전에 고래자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기존 어업과의 마찰을 줄이면서 환경시 관광객이 안전과 생태자원의 보호 등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5. 지원 및 협조체제의 강화

1) 공공부문의 지원 및 협조체제 강화

어촌지역에서 어촌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어촌공동체는 어장을 중심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일정한 배타적 사용권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지역사회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개발과 관련하여 일정 공유수면에 대한 어촌공동체의 전통적인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때 주민 참여에 의한 지역사회 중심의 어촌관광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어촌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소득기반시설 부족, 어촌계 자산 부족, 어촌주변 관광자원 부족, 어촌계원 참여부족, 어항시설 미비, 어촌계 경영능력 부족 순으로 나타나 어촌발전을 위해서는 소득사업 등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2) 관광기반시설의 확충

어촌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도로, 주차장, 쓰레기 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어촌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반시설의 확충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어촌 지역사회가 보유한 관광자원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관광객이 그 지역에 접근하거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해 필요로 하는 교통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지역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도로, 주차장 등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시설을 포함하여 공유수면에 건설되는 어항시설은 사회간접자본의 일종으로서 공공부문이 그 건설의 책임을 지고 있다.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의 확충은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관광개발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3)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과 지원책 강화

어촌의 기능을 고기를 잡는 마을로부터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의 어촌으로 전환이 요청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촌주민이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어업 이외의 생산에 관심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어촌과 바다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그 일환으로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이 요청되고 있다. 어촌지역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기존 어업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어촌주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어촌주민이 어촌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는 자질을 계발하는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관의 활용, 자발적인 참여 교육, 사후평가시스템 도입 및 지속적인 인적자원관리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장 결 론

본 연구는 현행 어촌계 제도 하에서 어촌계의 기능과 어촌계와 행정과의 관계 등 조직을 검토하고, 국내·외 어촌개발 사례 및 제주지역 어촌의 개발여건 등을 조사하여 어촌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개발, 어촌계 제도, 어촌관광 개발에 관한 기존 연구보고서 및 논문 등의 문헌조사와 일선 어촌계장을 대상으로 어촌지역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어촌개발의 제약요인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주특별자치도내 어촌지역의 문제점을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요약하면, 내부적 요인으로는 첫째, 어촌관광 등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체자금의 부족과 사업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둘째, 소득사업의 지원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소득사업은 주로 민박시설과, 수산물직판장, 식당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관광객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시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촌계는 마을에 비하여 재정형편이 열악하여 어촌계 운영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첫째, 소득기반시설과 어촌관광자원의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어촌계에서는 어업인 소득사업인 수산종묘방류사업 등은 투자가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여 사업비 확대 지원을 바라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어촌계 활성화 정책의 발전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촌주민에 대한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 어촌 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 의식과 관광개발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육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어촌활성화를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은 소수 핵심적인 리더에 대한 교육과 아울러 어촌계 또는 마을의 자체교육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때 교육효과는 크게 높아질 것이다.

둘째, 수산시설을 이용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수산시설은 훌륭한 관광자원이다. 인공어초시설을 이용하여 바다낚시터나 수중생태공원의 조성, 스킨스쿠버다이빙의 활동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이다. 또한, 어항시설인 방파제

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바다낚시터로 조성하거나 일부 어항구역에는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해상 어류가두리 시설 중 일부를 이용하여 바다낚시터로 개발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셋째, 유어장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 유어장 운영상 문제점으로 유어장 이용에 대한 이용자와의 요금징수에 대한 불필요한 마찰의 발생과 숙박, 어촌체험, 이벤트 등 육상 활동과 연계한 프로그램의 부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홍보의 부재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경영마인드 제고, 유어장 홈페이지 활성화, 어촌계 구성원 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유어장내 어류자원보호 방안 강구, 유어장 편의시설의 체계적 운영 관리와 육상프로그램의 강화 등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어촌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어촌관광은 관광객이 직접 어촌을 방문하여 직접 보고, 느끼고,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체험적 요소를 포함한다. 특히 어촌에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바닷잡이 체험, 고망낚시 체험, 정치망 그물 올리기 체험, 원담에서 고기잡기 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어업의 메뉴를 발굴하여 어업체험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어촌계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어촌계장은 행정, 수협 등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각종 어촌계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마을에 비하여 대우가 열악하여 사명감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임으로 어촌계장의 처우개선을 통한 사명감 고취와 수산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어촌계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여섯째, 영등굿 등 어촌문화 자원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어촌 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발굴은 어촌관광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영등굿 등의 관광자원화 방안은 행사장소의 확보와 수석 심방에 대한 기능보유자 등록 지원, 행사비용의 지원을 충족시키면서 소규모 영등굿 전시관 건립, 지역축제와 연계한 굿의 재현 등 실행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관광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어촌관광개발을 위해서는 도로, 주차장, 쓰레기 처리장 등의 기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입장에서는 기반시설의 확충은 자체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관광개발의 전제조건으로 인식되므로, 어촌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에 적극적

인 개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다. 어촌지역 리더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기존 어업중심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어촌주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어촌주민이 어촌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 수 있는 자질을 계발하는 교육과정이 개설되어야 한다. 어촌지역 리더의 육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관의 활용, 자발적인 참여 교육, 사후평가시스템 도입 및 지속적인 인적자원관리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다른 지역이나 정책당국자까지 의견을 듣지 못하고 어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교차분석 없이 단순 빈도 분석에 그쳤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어촌계 활성화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앞으로 어촌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단행본

- 권연옥. (1997). 「지역사회개발론」. 서울: 학문사.
- 김용웅. (1999). 「지역개발론」. 서울: 법문사.
- 남제주군. (2006). 「남제주군 해양관광발전 기본계획」. 제주도 남제주군.
- 문병집. (1988). 「지역사회개발의 이론과 실제」. 서울: 법문사.
- 박광범. (2005). 「어촌관광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서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정책연구원.
- 박광순. (1998). 「바다와 어촌의 사회경제론」. 전남대학교 출판부.
- 박종화·윤대식·이종열. (1998). 「지역개발론」. 서울: 박영사.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95). 「어촌지역 활성화 사례집」. 서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_____ . (2007). 「어촌계분류평정표 및 현황」. 서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수산청. (1996). 「수산청 30년사」. 서울: 수산청.
- 장은영. (2005). 「체험관광의 이론과 실제」. 서울: 백산출판사
- 정지용·임상봉. (1997). 「지역사회개발학」.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한국지역개발협회 교재편찬위원회. (1998). 「지역개발학 원론」. 서울: 법문사
-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바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만나다」. 서울: 해양수산부·한국해양수산개발원.

나. 논문

- 고병호. (1995). 지역개발이론의 체계적 접근과 발전동향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보」.
- 김성귀·홍장원·박상우. (2001). 「어촌관광 유형별 개발방안 연구」.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성귀. (2001). 어촌관광의 활성화 방안.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199호.

-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김성귀 · 홍장원 · 이성우 · 최지연. (2007).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농어업 · 농어촌 특별대책 위원회. (2004). 「어촌지역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방안 연구」. 서울: 농어업 · 농어촌 특별대책 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 박석두 · 김태연. (2004). 「농촌 지연산업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안중기 · 김승 · 조용훈. (2000). 「어촌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 옥영수. (2004). 어촌의 구조변화와 향후 어업 및 어촌정책 방향.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39호.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윤상호 · 김성귀 · 김종덕. (1998). 「어촌 친수공간의 개발 필요성 제고」. 서울: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 이규복. (1990). 「한국 농어촌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기옥. (1998). 「농어촌 지역개발사업의 성과와 발전방향」. 경기도: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
- 이승우 · 홍장원 · 한광석. (2004). 「수산시설의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_____. (2001). 「어촌관광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 해양수산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이승우 · 이종훈 · 이윤정. (2007). 「어촌지역 리더 육성과 지원방안」. 서울: 한국 해양수산개발원.
- 최병길. (2005). 「어촌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최성애. (2001). 지속가능한 어촌관광에 관한 고찰.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199호.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홍장원 · 이윤정. (2008). 지역축제를 통한 연안지역 해양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85호.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기형·이승우. (2000). 「주민참여에 의한 어촌관광개발 활성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기형. (2001). 국내 어촌관광 실태분석.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05호.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_____. (2001). 지속가능한 어촌관광 개발과 주민참여.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198호.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다. 기타

법제처. 「수산업법」.

_____. 「수산업협동조합법」.

_____.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서종혁. (1995). 「선진 농어촌 2000, 정책사업 대심포지엄」. 경기도: 농어촌진흥
공사

안희도·강연실·사토 아키히토·다케우치 하루시게. (2006). 「어업개발과 지역
발전」. 서울: 한국어촌어항
협회.

윤창운. (1990). 「열리는 어촌관광시대」. 어민지.

이승우. (2003). 어촌의 비전은 없는가. 「월간 해양수산」. 통권 제228호.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_____. (2007). 「어촌관광의 역할과 과제」.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좌혜경. (2006). 「해녀 생업 문화와 전승보존을 위한 노력」. 제주해녀 삶의 질 향상과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세미나.

해양수산부. (2003). 「어촌지역 활성화와 어업인 복지 확충」. 서울: 해양수산부.

_____. (2004).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어촌관광진흥 종합대책」. 서울:
해양수산부.

_____. (2003). 「어가소득 향상을 위한 어업외 소득증대 세부실시방안」.
서울: 해양수산부.

_____. (2007). 「2007 해양관광 심포지움」. 서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2007). 「어촌체험마을조성사업 계획」. 서울: 해양수산부.

_____ . (2007).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 . 서울: 해양수산부.
_____. (2007). 「어촌체험마을 컨설팅 지원사업계획」 . 서울:
해양수산부.

현진오. (2007). 「해녀축제의 필요성과 현실화 방안에 대한 모색」 . 2007 제주해양연맹
정기학술 세미나.

일본 농림수산성. (2005). 「수산기본계획」 .

일본 사단법인 전국어항협회. (2003). 「어항」 .

일본 수산청 홈페이지(www.jfa.maff.go.jp).

<http://www.naver.com>

2. 외국문헌

Friedmann, John. (1981). 「The Active Community: Towards A Political-
Territorial Framework for Rural Development in Asia」 .
R. P. Misara(ed.). Rural Development: National Policies
and Experiences, Nagoya: Muruzen Asia.

Geltz, D. (1991) 「Festivals, Special Events and Tourism」 .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Harriss, John, ed. (1984). 「Rural Development: Theories of Peasant
Economy and Agrarian Change」 . London: Hutchinson & co.

Marc Nerfin. (1987). 「Neither Prince nor Merchant: Citizen-An Introduction
to the Third System」 . Development Dialogue.

農村生活総合研究ヒソター. (1991). 「ふるさとのおこし資源あれこれ」 .

都市農村交流研究會. (1985). 「都市と農村の交流」 . ぎょうせい.

일본 능률협회. (1991). 「호랄개발의21世紀戰略」 .

佐々木雅幸. (1994). 「都市と農村の内發的發展」 . 自治体研究社.

依光良三. (1996). 「クリンツリズムの可能性」 . 日本經濟評論社.

ABSTRACT

A Study on Fishing Fraternity Revitalization on Jeju Island

Tae-Hee Park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Sung-Jun Kim)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potential possibility and development measures of fishing villages as a means of fishing fraternity revitalization. I took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study from previous national and international literature on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and fisheries, and the spatial scope of the study is limited to fishing fraternitie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JSSP). With a survey sent to the public officials who are currently in charge of the Fishing Village Section, I found out the obstacles for the development of fishing villages and then provided the countermeasures for fishing fraternity revitalization.

The analytical frame for the study consists of the internal and external resources for fishing fraternities. For the internal resources side, I looked into the capability of residents, physical infrastructures, and management systems for fishing fraternities. For the external resources side, I examined the necessity of new tourism resources and the support and cooperation system for them.

According to the survey, the problems of fishing fraternities in JSSP are divided into two types of factors, internal factors and external factors. For the internal factors, first, the fishing villages do not have enough funds and real estate to allow them to run tourism for

themselves. Second, the assistance from the local government, to increase the income for fishing villages, is very small. Even though their major income comes from renting pensions, selling marine products or running restaurants, the participatory programs for visitors are not numerous enough. Third, fishing villages have much more difficulty in keeping fraternities because their financial conditions are far worse than that of non-fishing villages.

For the external factors, first, there is a lack of infrastructure for income improvement and tourism resources. Second, from the viewpoint of fishing fraternities, fishing villages want to increase funding support for fishery-seed discharging businesses.

Based on the results, the development measures for fishing fraternities can be summarized as:

- First, education for fishing village residents should be increased.
- Second, a measure for utilizing fishery facilities as tourism resources should be prepared.
- Third, the revitalizing of fishing areas for tourists is needed.
- Fourth, participatory programs for tourists should be developed.
- Fifth, more support for fishing fraternities should be provided.
- Sixth, an effort should be made to turn traditional Jeju fishing-village ceremonies, such as Yongdung-goot (an annual shamanistic ceremony honoring the god of the sea), into tourist attractions.
- Seventh, the tourism infrastructure should be expanded.
- Lastly, leaders for fishing villages should be cultivated and more support for them should be given.

This study merely presents the countermeasures for fishing fraternity revitalization. Therefore, a follow-up study is required to provide detailed action plans for the above-mentioned countermeasures.

<부록 1>

어촌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표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에 근무하다가 현재는 농림수산물부에
과건 근무하면서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준비중인
박태희입니다.

본 설문지는 제주 어촌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문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어촌계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본 조사를 실시
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결과는 연구 목적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소 바쁘시더라도 어촌지역의 발전방안 마련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설문조사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봉한 회송용 봉투는 2008. 7. 5일까지 회송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 어촌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08. 6.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일반행정전공 박태희
(연락처 : 011-692-9392)

I. 귀하의 인적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 ① 20대미만()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이상()

3. 귀하의 어촌계장 재직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① 1년미만() ② 1~3년미만() ③ 3~5년미만()
④ 5~7년미만() ⑤ 7~10년미만() ⑥ 10년 이상()

4. 귀하가 소속한 어촌계를 말씀해 주십시오.

_____ 수협 _____ 어촌계

II. 어촌지역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해당사항에 ○표나 √를 해 주십시오. 특별한 주문이 없으면 한가지에만 표시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어촌의 미래에 대하여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① 매우 밝다() ② 밝다() ③ 보통이다()
④ 어둡다() ⑤ 매우 어둡다()

2. 귀하의 어촌계는 어촌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3. 귀하는 어촌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어촌의 개방() ② 어촌자원의 다양한 활용()
③ 인적자원의 교육·육성() ④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⑤ 정부의 투자() ⑥ 지역브랜드 창출()

4. 귀 어촌계에 어촌관광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 어느 정도 어촌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크게 기여할 것이다() ② 조금 기여할 것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변화가 거의 없을 것이다() ⑤ 전혀 기여하지 않을 것이다()
5. (4번 문항중 ①번과 ②번 응답자만 해당) 귀하는 어촌관광사업이 어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 기여한 측면 하나만 고르세요.
 ① 지역특산품의 판매액 증가() ② 지역주민의 자긍심 제고()
 ③ 어촌체험 관광의 입장료 수입() ④ 민박소득 증가()
 ⑤ 식당소득 증가()
6. 귀하의 어촌의 가장 큰 소득원은 무엇입니까?
 ① 어업() ② 농업() ③ 식당업()
 ④ 숙박업() ⑤ 수산물판매업()
7. 3년전에 비해 귀 어촌계의 소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① 30%이상 늘었다() ② 30~10%정도 늘었다()
 ③ 10%이내로 늘었다() ④ 3년전과 비슷하다()
 ⑤ 10%정도 줄었다() ⑥ 10~30%정도 줄었다()
 ⑦ 30%이상 줄었다()
8. 귀 어촌계에 지원된 사업 중에 소득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해당된 것 전부 표시해 주십시오)
 ① 민박시설() ② 수산물직판장()
 ③ 활어횃집 또는 향토음식점() ④ 육상양식장()
 ⑤ 체험어장(유어장 등)() ⑥ 지원된 소득사업이 없다()
 ⑦ 기타()
9. 귀 어촌계에 지원된 사업 중 소득사업의 경우 운영 및 관리는 어떻습니까?
 ① 잘 운영되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미흡하다()
 ⑤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
10. (9번 문항중 ④번과 ⑤번 응답자만 해당) 소득사업 운영이 잘 안되고 있을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어촌계 경영능력 부족() ② 운영자금 부족()
 ③ 어촌계원 참여의지 부족() ④ 사업내용과 입지여건이 안 맞아서()

11. 귀 어촌계에서 어촌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① 어촌민박() ② 육상양식장() ③ 어촌체험장()
 ④ 관광유람선() ⑤ 수산물 가공시설() ⑥ 관광낚시터 조성()
 ⑦ 수산물직판장() ⑧ 활어횃집 또는 향토음시점()
12. 귀 어촌계에서 어촌관광 등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가장 어려운 점은 어떤 것입니까?
- ① 어촌계 자체자금이 부족하다() ②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다()
 ③ 어촌계원 참여도가 낮다() ④ 어촌계 사업수행능력 및 경영능력이 부족하다()
 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복잡하다() ⑥ 마을주민들이 협조가 부족하다()
13. 마을어장내 일반주민이나 관광객이 체험활동(바릿잡이 등) 허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주민과의 화합차원에서 전 어장 허용이 필요하다()
 ② 마을어장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어장만 허용되어야 한다()
 ③ 자원관리에 지장이 많기 때문에 어촌계원이 아니면 누구든지 입어를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14. 귀하가 볼 때 어촌발전의 저해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어촌계 경영능력 부족() ② 어촌계 자산 부족() ③ 어촌계원 참여 부족()
 ④ 어촌계 주변 관광자원 부족() ⑤ 어항시설 미비()
 ⑥ 소득기반시설 부족()
15. 귀하는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음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정부와 지역주민의 공동투자() ② 관광객 편의시설 정비 및 확충()
 ③ 어항을 중심으로 한 어촌종합개발() ④ 어업체험 및 체험어장 개발()
 ⑤ 관광객 유치 홍보 전략() ⑥ 지역주민의 교육() ⑦ 우수한 지역리더 육성()
16. 귀 어촌계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를 계절별로 추정한다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봄 : 주말 하루평균(명), 평일 하루평균(명)
 ② 여름 : 주말 하루평균(명), 평일 하루평균(명)
 ③ 가을 : 주말 하루평균(명), 평일 하루평균(명)
 ④ 겨울 : 주말 하루평균(명), 평일 하루평균(명)
 ※ 방문객이 없을 경우 ()안에 ○표나 없음을 표시해 주십시오

17. 귀 어촌계 관내 주민들은 관광객이 방문할 경우 어떻게 대응 하십니까?

- ① 매우 반갑게 맞이한다() ② 약간 반갑게 맞이한다()
- ③ 그저 그렇게 맞이한다() ④ 덜 반갑게 맞이한다()
- ⑤ 매우 반갑지 않게 맞이한다()

18. 관광객이 귀 어촌 방문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① 쓰레기 처리문제() ② 마을주변 교통체증 및 주차시설 문제()
- ③ 해양환경 훼손() ④ 지역 미풍양속 훼손()

19. 3년전에 비해 귀 어촌계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얼마나 증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두배 이상 늘었다() ② 50~100%정도 늘었다()
- ③ 10~30%정도 늘었다() ④ 10% 이내로 늘었다()
- ⑤ 10%정도 줄었다() ⑥ 10~30%정도 줄었다()
- ⑦ 30~50%정도 줄었다() ⑧ 50%이상 줄었다()

20. 어촌계장으로 재직 하시면서 관계기관 등에 바라는 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어촌계 정관(예)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어촌계(이하 "계"라 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며 "○○어촌계"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계는 어촌계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역) 이 계의 구역은 ○○ 군 읍·면
○○ 시 동
○○리, ○○리, ○○리,
○○리, 일원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계의 주된 사무소는 ○○ 읍·면
○○리에 두고
○○ 시
필요시 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종류) ①이 계는 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교육·지원사업
 - 가.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 나. 어업에 관한 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지도
2. 어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3. 소속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어업권의 행사
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운영 및 관리
 - 가. 선착장, 선류장, 선양장
 - 나. 공동처리장, 공동창고
 - 다. 기상신호대

라. 어부림

마. 정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보조금으로 지원한 시설 및 위탁한 사항

바. 그 밖에 조합의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어촌 공동시설

6. 수산물의 간이공동제조 및 가공

7. 어업자금의 알선 및 배정

8. 어업인의 후생복지사업

9. 구매·보관 및 판매사업

10. 다른 경제단체·사회단체 및 문화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의 위탁사업 및 보조에 따른 사업

12. 다른 법령이 어촌계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4. 그 밖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이 계가 제1항제11호의 위탁사업을 할 때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합과 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공고방법) 이 계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계원에게 통지한다.

제7조(통지 또는 최고방법) 이 계의 계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계원명부에 기재된 계원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다만, 계원이 따로 이 계에 연락처를 통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8조(규약) ①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정한다.

1. 총회(총대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업무의 집행 및 회계에 관한 사항
3. 계원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조직에 관한 사항
6. 어업권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이 계의 규약은 조합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회장이 정한 규약(예)에 따라 제정·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장 계 원

제9조(계원의 자격) 이 계의 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조합의 조합원은 계에 가입할 수 있다.

제10조(준계원) ①이 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준계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다.

1.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계원의 자격이 없는 어업인 중 이 계가 취득한 마을어업권 또는 계의 구역안에 있는 조합이 소유한 마을어업권의 어장에 수산업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라 입어하는 자
2. 계의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계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 ②준계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준계원은 이 계가 행하는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준계원의 경우에는 마을어업의 어장안에 입어할 수 없다.
- ④준계원에 대하여는 제11조제2항 내지 제5항, 제13조, 제16조 내지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1조(가입) ①이 계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서식의 가입신청서에 출자증권 사본을 첨부하여 계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계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총회에 부의하여 계원으로서 자격유무를 심사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총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부하거나 그 가입에 관하여 다른 계원에 대한 것보다 불리한 조건을 부할 수 없다.
- ④가입신청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 계는 그 가입을 승낙하지 아니한다.
 1. 이 계의 설립 또는 사업을 방해한 자
 2. 이 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손상시킨 자
- ⑤가입을 승낙할 때에는 서면으로서 이를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고 계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상속에 따른 가입) ①사망으로 인하여 탈퇴된 계원의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선정한 1인의 상속인을 말한다)이 계원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계원이 될 수 있다.

- ②제1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13조(계원의 신고의무) 계원이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계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 계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14조(계원의 책임) 계가 그 재산으로서 계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계원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
- 제15조(의결권 및 선거권) 계원은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 제16조(탈퇴) ①계원이 계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의 의사를 어촌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한다.
1. 계원의 자격이 없는 때
 2. 사망한 때
 3. 파산선고를 받은 때
 4. 금치산선고를 받은 때
 5.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계원 자격 유무는 총회 결의에 따른다.
- 제17조(제명) ①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총회 개회 10일전에 그 계원에게 제명사유를 통지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년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이 계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경비의 납입 그 밖의 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정관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현저히 손상한 때
 4. 이 계의 사업을 방해한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명된 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3장 경비부담

제18조(경비의 부과) ①이 계는 제5조제1항제1호, 제5호, 제6호 및 제8호에 정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계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과금액, 부과방법, 부과시기와 징수방법은 총회에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④계원은 이 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에 대하여는 상계로서 이 계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9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이 계는 계의 사업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이 계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의하여 운송 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계는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이 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장 총회

제20조(총회) ①총회는 계원으로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총회의 의장은 계장이 된다.

제21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1회 회계년도 종료 후 3월이내에 계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2조(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계장이 소집한다.

1.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계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으로 하는 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계장에게 제출하고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계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있어서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목적으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②제1항제2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장은 2주일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제3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총회소집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23조(감사의 총회소집) ①감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을 때
2. 제2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계장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22조제2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경우에 감사는 총회소집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총회소집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4조(계원 대표의 총회소집)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은 계원 대표가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1. 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23조제2항의 기간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
2. 임원 전원의 결원으로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을 때

②제1항의 경우에는 계원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25조(총회소집통지) 총회소집의 통지는 그 개회 7일전까지 회의목적·부의안건 및 회의일자를 기재한 총회소집통지서의 발송에 의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총회를 다시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회전일까지 통지한다.

제2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계원의 제명
3. 해산
4. 간사를 제외한 임원의 선출과 해임
5. 자금의 차입
6. 사업계획 수립 및 수지예산의 편성과 그 변경
7. 결산의 승인
8. 경비의 부과·수수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결정
9. 어업권 또는 부동산 그 밖의 재산의 취득 및 처분. 다만, 다음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행위

나. 담보물권의 행사와 관련된 행위

10. 계원 및 준계원의 가입
11. 법정적립금의 사용
12.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으로 정한 것 이외에 계가 의무를 지거나 권리를 상실

하는 행위

13. 그 밖에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제9호, 제11호 및 제12호의 사항은 조합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정관(예) (제1조의 어촌계 명칭 및 제3조의 계의 구역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은 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의결권의 제한) 총회에서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긴급한 사항으로서 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속행된 총회의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의결권의 대리) ①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대리인은 다른 계원,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또는 본인의 사용인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계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③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이해상반의 경우) 총회에서 이 계와 계원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의사에 관하여는 당해 계원은 그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2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이상의 계원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계장은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3조(총회의결의 특례) ①계의 해산은 계원의 투표로서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원투표의 통지·방법 그 밖에 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주) 총대회를 두는 계의 경우에는 제34조 내지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둔다.

제34조(총대회) ①이 계는 계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갈음할 총대회를 둘 수 있다.

②총대회는 계장과 총대로 구성하고 계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총대회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그 의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35조(총대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총대는 성실히 총대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가하여야 한다.

②총대회는 총대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의결로서 총대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4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총대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3회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총대회에 출석하여 동일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총대회의 의사를 방해한 때

3. 계의 사업 또는 업무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거나, 계의 명예 또는 신용을 실추케하는 행위를 한 때

제36조(총대의 자격, 정수, 임기 및 선거) ①총대는 계원중에서 선출하며 총대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한다.

②이 계의 총대의 수는 ○○인으로 하며, 총대 선출구역은 리, 동, 부락을 단위구역으로 한다. 다만, 단위구역별 총대수는 계원수에 비례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③총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 최종의 결산기의 최종월 이후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전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정기총회가 종료될 때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④총대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총대선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원수를 보선하며 보선된 총대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총대의 결원수가 정수의 5분의1이하인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임기만료에 의한 총대의 선거는 총대의 임기만료전 15일부터 30일까지에 실시하여야 한다.

⑥총대는 이 계의 임원 또는 직원과 소속 조합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⑦제4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0호, 제13호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총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⑧제2항의 계원수는 총대선거일 1월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주) 제2항의 총대의 정수는 10인이상 15인이하로 한다.

제5장 임원과 직원

제37조(임원) 이 계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계장 1인
2. 간사 1인
3. 감사 1인

제38조(임원의 선임) ①계장은 계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중에서 계원이 총회 또는 총회외에서 직접 선출한다.

(주) 계장을 총대회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계장은 계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중에서 총대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②감사는 계원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주) 총대회를 구성하고 있는 계는 “총회”를 “총대회”로 한다.

③간사는 계원중에서 계장이 임면한다.

제39조(임원의 직무) ①계장은 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간사는 계장을 보좌하고 계장이 결위·구금되거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30일이상 장기입원 등 부득이한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총회(총대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매회계연도 1회이상 계의 재산과 사업진행 사항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사는 이 계의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총회와 조합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감사의 대표권) ①계가 계장 또는 간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감사
가 계를 대표한다.

②계와 계장 또는 간사간의 소송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제41조(임원의 임기) ①계장과 간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
로 한다.

②제1항의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당선일이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이후일 때에는 당선공고일로부터 기산한다.

③임기만료전 임원의 궐위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당선공고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제3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의 규정은 이 조의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4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계의 임
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
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법 제170조제2항제1호 또는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에 규정된 개선(改選)또는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만료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의 기간중에 있는 자
9.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0. 법 제178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1. 선거일공고일 현재 이 계의 계원 신분을 2년이상 계속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
12. 계장 및 감사의 경우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감사의 경우에는 임명일 현재 소속조합 또는 이 계에 대하여 500만원 이상의 채무(보증채무는 제외한다)를 6월이상 연체중에 있는 자
13. 법에 따른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본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거나 취소된 후 그 확정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4. 총회의, 총회, 또는 총대회에서 해임의결된 자로서 해임 의결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5. 정관부속서 임원선거규정에서 정하는 기타 자격제한 자

②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으며, 당선인이 선거일 후 임기 개시전에 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선외 효력이 상실된다.

③임기중에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 퇴직된다. 이 경우 제11호 및 제12호의 "선거일공고일 현재" 또는 "임명일 현재"는 "현재"로 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3조(임원의 성실의무) ①임원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 및 총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계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계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③임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임원이 결산보고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이 계 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계장과 감사에 대하여는 감사가, 임원전원에 대하여는 계원(총대) 5분의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계원대표(총대 대표)가 이를 행한다.

제44조(서류비치의 의무) ①계장은 정관을 각사무소에 비치하고, 총회의사록과다 음 사항을 기재한 계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
2. 가입, 탈퇴의 사유와 그 년월일
3. 어업의 종류
4. 배당금 및 손해액의 납입기록

②계원과 계의 채권자는 제1항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계가 정한 비용을 납입하고 서류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는 정당한 이유없이 그 교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5조(임원 및 직원의 경업금지) 임원 및 직원은 총회의 승인이 없으면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계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할 수 없다.

제46조(임원과 직원의 겸직금지) ①계장, 간사 및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으며, 이 계의 총대 또는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이 계의 임원과 직원은 다른 계, 소속조합 또는 다른조합(다른 법률에 의한 협동조합을 포함한다)과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47조(임원의 보수) 계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여비 그 밖의 실비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임시계장 임명) ①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해당됨에도 계원 대표의 총회소집이 1월이상 지연되어 계의 정상적인 업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합장이 임시계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②임시계장은 취임한 날로부터 1월내에 총회를 소집하여 결위된 임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③임시계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계장이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제49조(임원의 해임) ①계원이 임원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계원 3분의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어 총회(총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총대회)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총대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총대회)는 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계원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외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다.

1. 총대회에서 선출된 계장은 총대 3분의1 이상의 요구 및 총대 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 총대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총대회에서 해임결정.

2. 총회의에서 직접 선출한 회장은 총대회를 두는 경우에 총대 3분의1 이상의 요구와 총대회의 의결을 거쳐 계원 투표로 해임결정. 이 경우 총대회의 의결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족수를 준용하며, 계원 투표에 의한 해임결정은 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의결한다. 단, 총회를 두는 경우는 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계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 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의결 한다.

③회장은 간사가 그 직무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거나 법령,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④해임 의결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임원에게 해임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해임의결일 7일전까지 통지하여 총회 또는 총대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0조(직원) 이 계는 필요한 수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6장 사업의 집행

제51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회장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 개시 1월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2조(비계원의 사업이용) ①이 계는 계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비계원에게 제5조의 사업을 이용시킬 수 있다.

②회계년도에 있어 비계원에 대한 사업의 이용은 각사업부분별로 그 사업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 제6호, 제9호 및 제11호의 사업은 이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계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계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자
2. 준계원
3. 다른 계 및 다른 계의 계원

제53조(공동판매)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동판매사업은 조합의 위탁판매사업에 지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조합장의 승인을 얻어 행할 수 있다.

제54조(어업권의 행사) ①이 계의 계원은 계가 소유하는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어업권 행사에 관하여는 수산업법 제38조에 따라 어업권의 행사방법, 어업의 시기, 어업의 순위 및 그 밖의 어장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55조(회계년도) 이 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6조(회계의 구분) 이 계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57조(법정적립금) 이 계는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월결손금이 있을 때의 적립금액의 계산은 당해 사업연도의 잉여금에서 그 보전에 충당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이를 행한다.

제58조(이월금) ①이 계는 지도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잉여금의 이월에 관하여는 제57조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임의적립금) 이 계는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57조의 법정적립금과 제58조의 이월금을 공제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동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사업준비금 등의 임의적립금으로 적립 한다.

제60조(자본적립금) 이 계는 다음 각호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자본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1. 감자에 따른 차익
2. 자산재평가차익
3. 그 밖의 자본잉여금

제61조(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①이 계는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손실금(당기순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한 때에는 미처분이월금·임의적립금·법정적립금·자본적립금의 순으로 이를 보전하여,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

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이 계는 결손을 보전하고 법정적립금·지도사업비이월금 및 임의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

③잉여금의 배당은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 물자의 수량·가격 기타 사업의 분량을 참작하여 계원 및 준계원의 사업이용 분량에 따라 이를 행한다.

제62조(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의 사용금지) 법정적립금 및 자본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이 계의 결손을 보전할 때
2. 이 계의 구역이 다른 계의 구역으로 된 경우에 있어서 재산의 일부를 다른 계에 양여할 때

제63조(결산) ①계장은 정기총회 1주일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결손금처리안)을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44조제2항의 규정은 본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계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승인을 얻은 후 대차대조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64조(여유금의 운용) 이 계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업무상의 여유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국채와 공채의 매입
2. 중앙회·조합 또는 금융기관에의 예치

제8장 해산 및 청산

제65조(해산) ①이 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산한다.

1. 부칙에 규정된 해산사유 발생
2. 총회의 해산의결
3. 계원의 수가 10인미만인 때
4. 시장·군수의 설립인가의 취소
5. 파산 또는 지급불능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계가 해산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내에 소속 조합의 조합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해산의 공고 및 통지) 이 계가 해산한 경우에는 2개월이상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2회이상 개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7조(청산인) 이 계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장이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8조(청산인의 직무)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없이 계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고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9조(잔여재산의 처분) 청산을 완료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제70조(재산처분의 금지) 청산인은 계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경비에 필요한 금액을 공탁하지 아니하면 계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제71조(결산보고) 청산사무가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예)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 이 정관(예)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의결한 날을 시행일로 하며, 시장·군수의 정관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인가일을 시행일로 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종전의 비법인어촌계정관(예)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임원 및 총대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일 현재 선거일이 공고된 경우 그 임원 및 총대의 결격사유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록 3>

어촌계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계장 및 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를 선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권) ①계원은 선거권을 가진다.

②선거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4조(선거일) ①임원의 선거일은 총회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정한다.

1. 임기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3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
2.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②정관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계장을 총회외에서 선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선거일에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선거일을 연기하거나 다시 정할 수 있다.

④계장이 궐위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기한내에 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관할 조합장이 선거업무를 행한다.

제 2 장 총회외에서 계장을 직접 선출하는 경우

제5조(피선거권의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장이 될 수 없다.

1. 정관 제42조제1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정관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경업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자
3.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정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과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있는 이 계의 임원과 직원

4.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정관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과 겸직할 수 없는 직에 있는 자.

제6조(선거일 등의 공고) 선거일 등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계장이 선거일전 14일에 주된 사무소 및 자연부락 단위로 공고한다.

1. 선거명
2. 선거인
3. 선거일
4. 피선거권
5. 후보자등록기간 및 장소
6. 투표개시시각 및 종료시각
7. 투표소·개표소의 명칭 및 소재지
8. 그 밖에 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선거인명부 작성) ①계장은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계원명부를 기준으로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선거일공고일로부터 5일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는 1부를 작성하여 어촌계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선거인명부에는 계원번호, 계원가입년월일, 주소, 성명, 생년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정정) ①계장은 선거일 5일전까지 장소를 정하여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선거권자는 제1항의 열람기간중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어촌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계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수정한 후 신청인과 당해 선거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장은 제1항의 열람기간중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당한 선거권자가 누락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선거인명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선거인명부는 선거일전일에 확정된다.

⑥계장은 후보자등록기간중 후보자의 서면에 의한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한다.

⑦후보자는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후보자 등록기간) ①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일공고일 다음날로부터 3일간 (공휴일을 포함한다)으로 하여, 등록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후보자등록기간내에 등록된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후보자등록기간을 2일간 연장하고 이 사실을 제6조의 선거공고 장소에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후보자등록 등) 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어촌계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 신청서 1부(소정양식)
2. 이력서 1부(소정양식)
3. 계원의 원장사본 1부(계장발행)
4. 채무의 연체유무확인서 각 1부(조합장, 어촌계장발행)
5. 비경업사실 확인서 1부(소정양식)
6. 범죄경력사실조회 회보서 1부(소정양식)

②계장은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이 없거나 제1항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③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유무의 자격심사는 선거일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등록무효 등) ①계장은 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하고, 당해 후보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지체없이 이를 통보한다.

②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어촌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계장은 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공고한다

제12조(선거운동의 정의 등) ①선거운동이라 함은 계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②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계장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도록 또는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이미 어촌계에 가입한 자 또는 어촌계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그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약속을 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나 후보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③계장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중에는 계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④누구든지 계장선거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제13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14조(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호소) ①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다만,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어촌계가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제15조(선거방법) ①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때에는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한다.

②투표는 선거인이 직접하되, 1인1표로 한다.

③선거인은 투표를 함에 있어서 그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선거관리자) ①계장은 후보자등록마감후 계원중에서 선거관리자 3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중 연장자를 대표로 한다.

②선거관리자는 선거에 관한 투표 및 개표사무를 통할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17조(투표소의 설치 등) ①투표소와 투표에 필요한 시설은 선거일전일까지 투표구마다 설치·설비한다.

②후보자와 투표참관인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투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어촌계의 직원 등을 투표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투표용지·투표함 등) ①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 게재순위에 의하여 “1, 2, 3”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②투표용지는 별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제19조(투표시간) ①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투표종료시각 현재 투표하기 위하여 투표소에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투표할 수 있다.

③투표는 선거관리자가 투표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유무에 관하여 확인한 후 게시한다. 다만, 투표개시시각까지 투표참관인이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최초로 투표하러 온 선거인으로 하여금 참관하게 한다.

제20조(투표의 제한) ①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선거인명부의 열람 및 정정 등)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유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자는 투표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더라도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21조(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절차) ①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여권·운전면허증·국가유공자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하며,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날인·무인 또는 서명하게 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선거관리자가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그 사인을 날인한 후 교부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하여 놓은 후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선거관리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지 아니한 선거인에게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후 이를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⑤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 또는 오손된 때에는 다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⑥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사인은 인영대장에 등록하고 날인한다.

제22조(투표참관) ①후보자는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2일까지 선거인중에서 투표소마다 투표참관인 1인씩을 선정하여 어촌계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가 없는 때에는 투표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가 선정·신고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으며, 선거일에는 투표소에서 교체신고할 수 있다.

③후보자는 참관인이 될 수 없다.

④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선거관리자는 투표참관인이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그 밖에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⑥투표참관인은 투표소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다.

제23조(투·개표소의 출입제한)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개표참관인, 선거관리자, 투·개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제24조(투·개표소의 질서유지) 선거관리자는 투·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투·개표가 실시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①누구든지 투표소안 또는 투표소 밖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제지하는 명령에 불응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퇴거당한 선거인은 최후에 투표하게 한다. 다만,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투표의 비밀보장) ①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다.

③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제27조(투표함의 봉쇄·봉인 등) ①투표종료시각이 된 때에는 투표소의 입구를 닫아야 하며, 선거관리자는 투표소안에 있는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면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그 자물쇠를 봉쇄·봉인한다. 다만, 정당

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투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투표함의 열쇠와 잔여투표용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각 봉인한다.

제28조(투표함 등의 송부) ①선거관리자는 투표장소와 개표장소가 다른 경우에는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 및 잔여투표용지를 개표소에 송부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함을 송부하는 때에는 그 수송의 안전을 위하여 투표참관인을 동반할 수 있다.

제29조(개표소 설치) 개표소는 선거일 전일까지 설치하고 개표관리에 필요한 설비를 한다.

제30조(개표사무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원을 둔다. 이 경우 개표사무원의 위촉은 제17조(투표소의 설치 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개표참관) ①후보자는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전일까지 어촌계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후보자는 개표참관인을 신고한 후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다.

③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다.

④선거관리자는 개표참관인이 법 및 이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여 그 시정을 요구한 경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시정한다.

⑤개표참관인은 개표소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다.

제32조(투표함의 개함) ①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되면 개시할 수 있다.

②선거관리자는 투표함을 개함하는 경우 개표참관인의 입회하에 그 뜻을 선포하고,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연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③투표함을 개함한 후에는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

수와 대조한다.

④선거관리자는 개표가 종료되면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선거록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개표의 진행) ①개표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투표수를 계산한다.

②후보자별 득표수의 공표는 최종 집계된 개표상황표에 따른다.

③개표에 있어서는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무효투표)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3.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가 아닌 다른 문자 또는 기호 등을 기입한 것
6.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7.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 안이 매워진 것으로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한 후보자란에만 2이상 기표된 것
3.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옮겨 묻은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인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제35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①선거관리자는 투표의 효력에 관

한 이의에 대하여 의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표의 효력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

제36조(개표관람) ①누구든지 구획된 장소에서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다.

②관람인은 제1항의 구획된 장소외의 개표장소에 출입할 수 없다.

제37조(투표지의 구분) 선거관리자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지를 유효·무효로 구분하고, 유효투표지는 후보자별로 구분·봉인한다.

제38조(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선거관리자는 투표관리상황 및 개표관리상황의 기록을 위하여 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을 작성한다.

제39조(선거관계서류의 보관) 투표지·투표록·개표록 및 선거록 그 밖의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는 당선인의 임기만료일까지 보관한다. 다만, 당해선거에 관한 선거소송이 당선인의 재임기간동안 법원에 계류중일 경우에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후보자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개표결과 나머지 후보자중에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당선인의 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거나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당선인에게 통지한다.

⑦어촌계는 당선인에 대하여 즉시 신원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1조(재선거 및 보궐선거)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선거결과 당선인이 없을 때
2.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사퇴,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한 때
3. 선거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경우 이외에 계장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42조(임기개시일 등) ①임기만료로 인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계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에 개시한다.

②제1항 이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선공고일에 개시한다.

③정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하여 겸직이 금지된 자중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에 제한이 없는 자가 당선되어 취임하는 때에는 취임전에 겸직이 금지된 그 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제43조(실비지급) 계장은 선거관리자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임원을 총회 또는 총대회에서 선출하는 경우

제44조(총회의 소집 및 의장) 계장(궐위시 그 직무대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임원선거를 위하여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주) 총회에 갈음하는 총대회를 둔 계는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현직 계장이 계장후보일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직무대행자가 총회에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이 경우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는 선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45조(후보자소개) ①의장은 투표에 앞서 기호순으로 후보자를 소개하고 후보자로 하여금 10분이내에 계의 운영에 관한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②후보자는 소견을 발표함에 있어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의장은 후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발언을 할 때에는 이의 중지를 요구하고 후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견발표를 중단시킬 수 있다.

제46조(선거의 진행) 의장은 후보자 소개가 끝나면 선거관리자로 하여금 투·개표사무를 진행하게 한다.

제47조(투표소 등) ①투표소는 총회의 개최장소에 설치한다.

②개표는 투표종료 즉시 투표장소에서 실시한다.

③선거인은 선거관리자의 투표종료선언전까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투표할 수 없다.

제48조(당선인의 결정) ①당선인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의 득표자로 결정한다. 다만,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결선투표에서 다수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그중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②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등록마감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49조(준용규정) 제5조 내지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6조, 제30조, 제32조(제1항을 제외한다), 제33조제2항 및 제3항, 제34조, 제35조, 제37조 내지 제39조, 제40조제4항 내지 제7항,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총회 또는 총대회에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예) 시행일 현재 종전의 비법인어촌계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정(예)는 이를 폐지한다.

감사의 글

참으로 힘들게 달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약간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0여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주지역 어촌계 활성화와 관련한 노력이 조그만 결실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직장파 학교를 오가는 동안 부족한 저에게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김성준 교수님의 노고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논문이 완성되기까지 세심한 지도와 조언을 해주신 강동식교수님, 황경수교수님, 학위과정 동안 좋은 강의와 격려를 해주신 권영호 전원장님, 양영철교수님, 남진열교수님, 양덕순교수님, 오승은교수님, 강영훈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논문 작성 과정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신 관광개발학과 이진희교수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승우박사님, 국립수산물과학원 이정희 양식관리과장님, 최동림박사님, 제주도 공보관실 오승철시인님, 행정실에 근무하는 부흥진선생님, 김성희선생님, 이수정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자료 정리 등 많은 도움을 주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최문보님, 홍원식님, 제주시 해양수산과 김승아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송창수계장님, 고민수님 등 동료 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바쁜 업무 속에서도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어촌계장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파견근무 동안 격려를 해주신 손재학어업자원국장님, 최완현과장님, 김재철서기관님, 박환준서기관님, 임남철사무관님, 김중건사무관님, 이병웅사무관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이 지면으로 고마운 뜻을 전해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봐 주시는 어머니님, 형과 누나, 여동생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내와 은영, 은정, 은현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합니다.

2009년 2월

박 태 희